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등록번호
11-1051328-100001-09



대한민국정부
korea.kr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kr

본 책의 내용은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살펴

<https://whatsnew.moef.go.kr>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금융·재정·조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00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기획재정부 005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006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환경부 007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관세청 008
조달청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조달청 009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조달청 01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01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금융위원회 012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013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금융위원회 014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금융위원회 015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용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 016

02 교육·보육·가족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교육부 019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가족부 020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해양수산부 021

03 보건·복지·고용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보건복지부 027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보건복지부 029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030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0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032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033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03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고용노동부 035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36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037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038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039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통계청 040

04 문화·체육·관광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045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04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047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048

05 환경·기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흥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0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환경부 05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환경부 054
온수배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 055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환경부 056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환경부 057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환경부 058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환경부 059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환경부 060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환경부 06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규정 시행	환경부 062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해양수산부 063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기상청 064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기상청 065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기상청 066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기상청 067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기상청 068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과기정통부 072
345kV 이상 국가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073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0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075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076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해양수산부 077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078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80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 (KSC)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081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조달청 082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조달청 083
「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통계청 084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085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특허청 086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특허청 087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특허청 088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089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특허청 090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공정거래위원회 091

07 국토·교통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국토교통부 095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096
건축법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국토교통부 097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098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099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국토교통부 100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국토교통부 101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국토교통부 102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103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104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해양수산부 105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해양수산부 10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해양수산부 107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108

08 농림·수산·식품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5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116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1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18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119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0
동물병원 진료비용 계시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1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22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3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12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125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6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기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7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128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129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30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31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3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33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34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135
먹는해양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해양수산부 136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해양수산부 137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해양수산부 138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해양수산부 139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140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141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142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143
수산증자 정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 144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산림청 147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148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농촌진흥청 149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농촌진흥청 150

09 국방·병무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병무청 15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병무청 154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병무청 155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병무청 156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병무청 157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청 158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병무청 159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방위사업청 160

10 행정·안전·질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 17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법무부 171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법무부 172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행정안전부 173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행정안전부 175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176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행정안전부 177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178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179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180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181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18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여성가족부 18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184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185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186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87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해양수산부 188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해양수산부 189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 190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인사혁신처 191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경찰청 192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93
군산, 목포, 제주 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해양경찰청 194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해양경찰청 195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해양경찰청 196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해양경찰청 197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198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방송통신위원회 199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01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202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00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005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006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	045

교육부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01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05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072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7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171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172

행정안전부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173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175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176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177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178



문화체육관광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	045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04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047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04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115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116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11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18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119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120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121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122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123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지정	12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125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126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기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127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128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129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130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131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13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133



산업통상자원부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073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0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시행	075

보건복지부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027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029

환경부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00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052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05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054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055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056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057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058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059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060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06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062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균절법) 시행	030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0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032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033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179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180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181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182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03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035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02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18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184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185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095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096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097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098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099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훈집도 개선	100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101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102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103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104

해양수산부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02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063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076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제재처분유예기간완화	077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105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106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107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108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133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134
평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135
먹는해양식품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136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137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138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139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140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141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142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143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144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186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187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188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189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19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078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080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081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191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	036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037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038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039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145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자 확대	146

국세청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	045
------------------------------	-----

관세청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008
----------------------------	-----

조달청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009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010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082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083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040
「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084



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15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154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155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156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157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158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159

방위사업청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160
--------------------------	-----

경찰청

7월 8일부터 화물차 적재량 초과 시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서도 과태료(6만원)가 부과됩니다	211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212

산림청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147
-----------------	-----

특허청

정별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085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086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087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088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089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090



기상청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064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065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066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067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068

농촌진흥청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흔입 예외기준 설정	148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149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150

해양경찰청

군산, 목포, 제주 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194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195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196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197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198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091
------------------------	-----



금융위원회

- | | |
|--|-----|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011 |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 012 |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013 |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 014 |
|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015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 016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 199 |
|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0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 201 |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 2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203 |
|-------------------|-----|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004
조각투자상품 이의 과세분류 규정 마련	기획재정부 005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006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조달청 009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011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013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 016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가족부 020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보건복지부 027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03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039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통계청 04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0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075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085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특허청 086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특허청 087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특허청 090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098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해양수산부 105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해양수산부 106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0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30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141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142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143
취업및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병무청 15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병무청 154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병무청 157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청 158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방위사업청 160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행정안전부 173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행정안전부 175
법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176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186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 190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인사혁신처 191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경찰청 192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93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8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047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048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환경부 05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환경부 062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훈입 예외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148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금융위원회 012
------------------------	------------------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금융위원회 015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교육부 019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해양수산부 021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038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환경부 054
온수배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 05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72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073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074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국토교통부 097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국토교통부 102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22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3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125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농촌진흥청 149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병무청 155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병무청 159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법무부 172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해양경찰청 196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방송통신위원회 199

10월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보건복지부 029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균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030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환경부 059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기상청 065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기상청 068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해양수산부 077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공정거래위원회 09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해양수산부 107
동물병원 진료비용 계시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1
먹는해양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해양수산부 136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병무청 156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178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181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184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185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202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

11월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환경부 007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036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기상청 064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기상청 066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089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농촌진흥청 150

12월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환경부 056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환경부 060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환경부 061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기상청 067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076
「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통계청 084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국토교통부 101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103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118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해양수산부 137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140

기타 2025년 상반기 기 시행되었거나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잠정, 날짜 미정 등)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제도 시행	관세청 008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조달청 010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금융위원회 0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032
분쇄기·훈환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033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03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고용노동부 035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037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046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흥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0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환경부 057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환경부 05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해양수산부 063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078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80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081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조달청 082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조달청 083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특허청 088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국토교통부 095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096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099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국토교통부 100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104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108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5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116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17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119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지정	농림축산식품부 124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26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기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7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128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129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31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13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33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34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135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해양수산부 138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해양수산부 139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 144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산림청 1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 17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법무부 171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행정안전부 177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179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180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18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여성가족부 183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87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해양수산부 188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해양수산부 189
군산, 목포, 제주 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해양경찰청 194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해양경찰청 195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해양경찰청 197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198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01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기상**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1.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011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전 업권의 DSR 적용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상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	0.75% ↓ 1.5%	[변동형] 100%
		[혼합형] ~80% 차등적용
		[주기형] ~40% 차등적용

*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0.75% 유지



02.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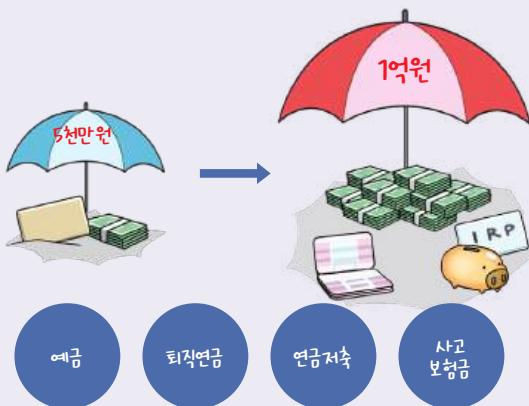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012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 → 1억원)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예금보호한도금액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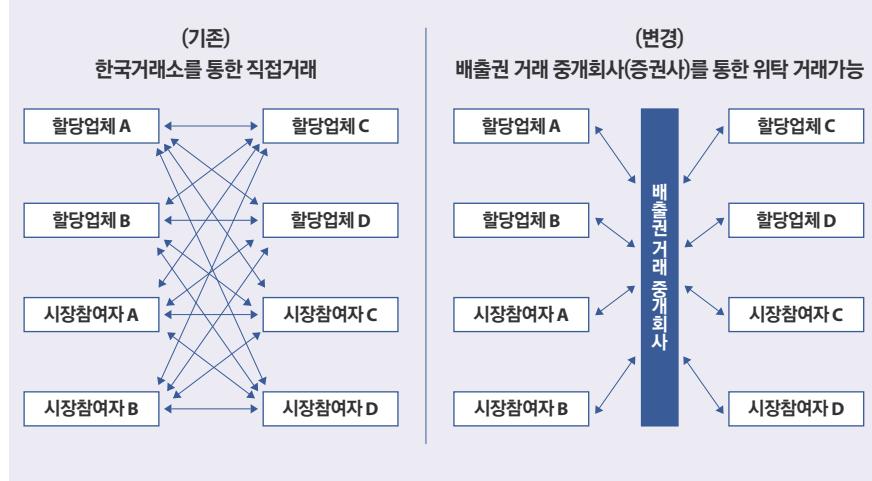
- 일반예금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예금과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시행일 : 2025년 11월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 ▶ (대상) 10년 이상 공제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 (변경내용)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025. 2. 18.)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퇴직소득 과세 해약환급금 대상에 10년 이상 공제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추가됩니다.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 ▶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다수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2024. 7.)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추진배경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주요내용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합니다.

- ▶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합니다.
*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며,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추진배경

세원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대상용역)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 ①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 ②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 ③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 ④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25. 2.)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됩니다.

- ▶ 시행령 개정 이후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위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누리집>보도·설명>“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추진배경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주요내용

그간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의 편리성 향상

시행일

2025년 11월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2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결정 공개를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합니다.

-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업비밀 등 사유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제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행정규칙>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5. 6. 1.)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추진배경

품목분류 결정 공개를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

주요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때 비공개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신설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

☎ 042-724-6124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달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조달청 평가위원을 각 기관이 자체 발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먼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여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 첫째, 평가 참여 전(前)에는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사전 유착이 있는지 익명으로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둘째, 평가 중(中)에는 평가위원의 태도·발언 등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대형 IT사업 평가 현장에도 투입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유도합니다.
- ▶ 마지막으로 평가 후(後)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을 혁신제품 및 건설용역 평가까지 확대하여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불공정한 유착 징후를 분석합니다.

또한, 자체발주 시 평가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협상계약 소액(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체로 확대 운영합니다.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공정평가체계 마련

추진배경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 지속,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등 발생

주요내용

- ‘모니터링단 운영 규정’ 제정 및 ‘공정평가 클린창구’ 개설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정비 완료하고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 (참고) ‘조달청 누리집’ 보도자료 |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 공정성·투명성↑(2025. 2. 28.), 불공정 조달평가… ‘공정평가 클린창구’에 신고하세요!(2025. 5. 1.)
- ‘24년 시범운영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대상을 자체조달 대상인 소액(추정가격 1억원 이하)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공공조달 전반 평가 공정성 제고
▣ (참고) ‘조달청 누리집’ 보도자료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공정성, 효율성 ↑(2025. 3. 28.)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42-724-7068

관급철근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확보, 가격경쟁 등을 위해 관급철근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 다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

- ▶ 먼저,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설정하여 기업의 생산능력 대비 과도한 수주 쏠림 발생을 방지하여 철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 ▶ 또한, 관급철근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납품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 시 3일 이내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합니다.
- ▶ 아울러, 가격변동성이 큰 철근의 특성상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을 제외하되, 수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담합근절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철근 계약방식 MAS로 전환

추진배경

철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

주요내용

철근조달 계약을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MAS계약으로 변경

시행일

2025년 5월 15일(종합쇼핑몰 등재는 철근업체 계약체결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1696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②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

※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금리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추진배경

가계대출 상환능력 심사시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주요내용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도 0.75%에서 1.5%로 상향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5천만원→1억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3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등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5천만원→1억원)

추진배경

2001년 이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2025. 1. 21.)

주요내용

-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별도보호한도(퇴직연금(DC, IRP 등)·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개정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00-2688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 * 사업보고서(1년단위), 분기·반기보고서 : 회사의 재무, 임원, 주주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까지)
 - ※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상장법인 등에 자본시장법(§161)이 규정한 사항 발생시 관련 내용 기재
 - ※ 기준에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가 가능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 5%룰*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 *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추진배경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공시의무 신설
-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시행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02-2100-2693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합니다.

- ▶ 아래 기업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평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① (신청대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 ② (결격사유) 최근 3년 내 형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 불가
- ▶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하여,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 선정(1천점 만점)
⇒ 매년 6.1일부터 3주간 신청 → 7~8월 평가 → 9월말 우수기업 선정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방안”(2024. 12. 31.) 및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의결”(2025. 5. 14.)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

추진배경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3년 유예(9년간의 자유선임 기간 보장)

시행일

2025년 5월 20일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 ▶ 2025년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하여 One-Stop으로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주심이 중단되어 제한·단전되었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채무원금 감면(최대 90%)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 ▶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3호. 2025. 3. 18. 개정 2025. 9. 19. 시행)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 시행

추진배경

전기요금과 금융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 실시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4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시 정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 또한,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도 기대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2. 27.)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추진배경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

주요내용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
-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형량 대폭 상향*

* 미등록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19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시행일 : 2025년 2학기

-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1~8구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I유형 다자녀	전액	600(+30)				440(+20)		360(+10)	100	
		610(+40)				505(+25)		465(+15)	135	
						전액			200	



0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020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2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50%)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됩니다.
※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2025년 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 적용

새로운 지원 금액은 2025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 044-203-6272)로 문의해 주세요.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추진배경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주요내용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단가 일부 인상

〈참고: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안) (단위: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I유형		600(+30)		440(+20)		360(+10)		100		
다자녀	첫째, 둘째	전액	610(+40)		505(+25)		465(+15)		135	
	셋째 이상				전액				200	

※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2025년 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 적용

시행일

2025학년도 2학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지원부

☎ 02-2100-6347
☎ 1644-6621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훌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 이하까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26

**통합해양교과서를 개정하여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보조교재를 도입하여
해양수산 인재양성을 도모합니다.**

* 인간과 해양(2015개정 교육과정, 2023년 개발) → 해양과 생활(2022개정 교육과정, 2025년 개발)

- ▶ ‘해양과 생활’ 과목은 해양 전반을 다루는 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 또한, 함께 보급하는 ‘해양과 직업’ 보조교재에는 해양 관련 진로와 직업, 미래 유망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청소년에게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수산·해운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2025년 9월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후 2026년부터 수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교 통합해양교육 개정교과서 개요

추진배경

해양수산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기후변화 속 해양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과서 개발

주요내용

- (5개 대단원 구성) 인간과 해양, 환경과 해양, 수산업과 어촌, 선박과 해운산업, 해상 안전
- (과목 성격) 해양역사, 환경, 산업 등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기초 교과로서의 역할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교양과목으로의 역할

시행일

-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2025년 9월(예정)
- (교과서 보급·수업적용) 2025년 10월 이후 보급, 2026년 1학기부터 수업 적용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0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27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시행일 : 2025년 7월 19일

-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0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030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균절법) 시행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2025년 10월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6개월 경과 전에 자발적 퇴사 시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지급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시행일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0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037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시행일 : 2025년 4월 29일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맞춰, 혁신적인 규제의 안정적 현장도입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을 실시합니다.
- 개발 및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전자적 침해 예방 지원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 신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교육 등 제품화 단계별 밀착 지원도 추진됩니다.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044-202-3427, 3412

**20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 ▶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공지사항 참고
-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 후견인이 됩니다).
- ▶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 ▶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 ▶ 또한,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아동의 입양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복지부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의 입양허가 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도 실시합니다.

* 이미 국내에 입국해 있어도 체류기간 등에 따라 국제입양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추진배경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운영

주요내용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후견인: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부(위탁기관)에서 양부모 상담·조사
-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심의를 통해
아동-양부모 결연
- 국제입양은 복지부(보장원)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행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044-202-3073, 308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합니다.

*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창업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 ▶ ①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②민간시장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 ▶ 탈수급 후 민간 취·창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금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지급

추진배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신설

주요내용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시행일

2025년 10월 중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균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상습 임금체불 균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 「근로기준법」(2025. 10. 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균절법) 시행

추진배경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법죄 배제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 ▶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자발적 퇴사시에도 사후지급금(50%) 지급

고용노동부 누리집>최근 제·개정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시행령” 검색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전액 지급

추진배경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2025. 1. 23.)에 포함

주요내용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7466

2025년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또한, 빈일자리업종(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확대 내용

구분	현행 지원요건	지원확대 요건
지원요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졸업예정자 참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지급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II*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II 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 (총 480만원)

* 유형II: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에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주요내용

-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スマッチ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된(2024. 6.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분쇄기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추진배경

분쇄기등과 구내운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시행일

2025년 6월 29일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추진배경

비상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

주요내용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②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추진배경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중복되는 교육은 감면하는 규정을 관리 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 043-719-1792

「담배유해성관리법」(2023. 10. 31. 제정)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됩니다.
- ▶ 이번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추진배경

담배의 폐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한적

주요내용

-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 (유해성분)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식약처장이 고시
 - * (정기검사)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 * (정보공개) 검사 결과 검토 후 식약처 누리집 등 공개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TF

☎ 043-719-3779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025. 1.)에 따른 혁신적인 규제의 안정적 현장도입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을 실시합니다.

- * 디지털의료제품: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 ▶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해킹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현장 수요에 따라 제품화 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디지털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추진배경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디지털의료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에 거쳐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

주요내용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시행일

2025년 4월 29일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6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인증 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하여 임상문헌 및 임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임상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

- ▶ 기존에는 허가받은 의료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별도로 거친 후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국제수준인 임상평가자료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받아 즉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적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위한 허가 지원방안 추진”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추진배경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시장진입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워,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절차 개선 필요

주요내용

새로운 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인증 시 임상시험결과, 임상문헌 및 임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임상평가제 도입

시행일

2025년 9월 1일(예정)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043-719-3802

**의료기기 제조소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 기존에는 품질책임자의 자격요건(학력,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품질책임자가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했으나,
 - 이미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이 확인된 경우라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책임자의 이직 부담을 완화하고 본연의 품질관리 업무에 집중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의료기기가 국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시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이미 자격요건이 확인된 품질책임자는 타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별도 자격 증빙자료 제출 면제

시행일

2025년 7월 2일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통계청 통계기준과

☎ 042-481-2204

1952년 제정, 2020년까지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운영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9차 개정하여 7월 1일 고시합니다(시행일 2026. 1. 1.).

- ▶ 이번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과 국내 보건정책 관련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 분류항목이 바뀐 30건의 코드정비와 표제어 및 색인어 등 총 154건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권고 용어(의학용어 제6판) 기준(혓바닥 → 혀뿌리, 발작수면 → 기면병 등)
- ▶ 또한, 최신 종양학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총 125개의 신생물 형태분류를 정비하였습니다.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개정근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주요내용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시행일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01.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045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체육 활동 증진 및 체육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합니다.



02.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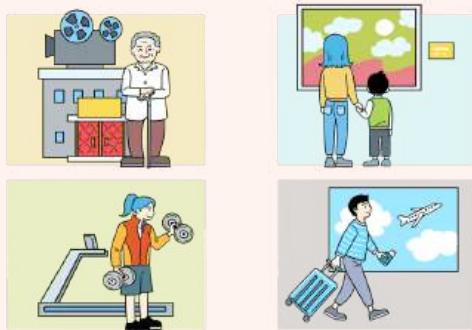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046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4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25년 2월 1일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됩니다.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명
 - (내용)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4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13만원 → 14만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국세청 원천세과

☎ 044-215-4212
☎ 044-203-3121
☎ 044-204-3345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확인(<http://culture.go.kr/deduction>)

- ▶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며, 공제금액은 기준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합니다.
-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주요내용

-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단,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시행일

(소득공제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4만원(7.7% 증)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2025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됩니다.

-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명
- (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4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시행일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2025년 11월 28일(금)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2

①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하였습니다.
- ▶ 해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사항은 2025년 9년 2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무공간에 기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배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책임자 지정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시행일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2025년 8월 1일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등: 2025년 9월 26일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 044-203-3193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절차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 ▶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됩니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위의 유형과 경증 등을 고려하여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 ▶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 ▶ 넷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던 현행 절차에 비해 신속한 조치 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추진배경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주요내용

-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절차 신설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제한 가능

시행일

2025년 8월 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01.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05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시행일 : 2025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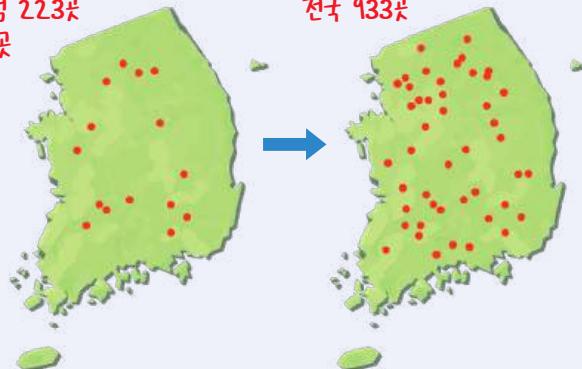
- 국민들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합니다.

- (2024년) 홍수경보 발령지점 223곳, 댐 방류지점 37곳 → (2025년) 전국 수위 관측소 933곳

홍수경보 발령지점 223곳

댐 방류지점 37곳

전국 933곳



0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053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시행일 : 2025년 8월 7일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소규모 취급시설: 영업허가 → 영업신고

-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영업신고
검사주기 4년

영업허가
검사주기 1~3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시행일 : 2025년 9월 25일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합니다.

(기존)연간 1만톤 이상 폐트를 생산하는 자

(변경)연간 5천톤 이상 폐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044-201-7662
☎ 044-202-6131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합니다.

※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

- ▶ 2024년 7월 환경부·과기정통부는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하여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 및 댐 방류지점(37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 2025년 6월 말부터는 위험한 상황(계획홍수위 도달)을 보다 넓은 범위(전국 수위관측소 933곳)로 확대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험지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 (안내문 예시) “하천 범람 위험 상황 발생, 위험지역 접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추진배경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정보 제공 확대

주요내용

운전자가 계획홍수위 도달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안내하여 위험지역(지하차도 등) 내 안전운전 유도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2025년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 ▶ 또한, 당초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또는 2년)을 주기로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차등화(1~4년)됩니다.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추진배경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 「화학물질관리법」(2024. 2. 개정, 2025. 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영업신고 제도 신설 등
- (취급시설 관리)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등

시행일

2025년 8월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1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합니다.

- ▶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만톤 이상 폐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폐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합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 ▶ 또한,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목표율 확대

추진배경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 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 사회 구축 필요

주요내용

(의무대상) 기존 ‘연간 1만톤 이상 폐트를 생산하는 자’ → 변경 ‘연간 5천톤 이상 폐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4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5년 9월 26일부터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됩니다.
- ▶ 또한,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추진배경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온배수 재이용 범위 확대)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
- (온배수 재이용 재정지원 근거 마련) 온배수 재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3

수질개선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11일부터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시행됩니다.

- ▶ 침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의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 ▶ 생물반응조의 오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text{kg}/\text{m}^3\cdot\text{일}$ 이하로 해야 합니다.
- ▶ 또한,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을 다양한 재질로 보강하던 것을 콘크리트 재질로 보강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추진배경

부적절 시설 설치, 관리 부실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설치 기준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침전분리조 설치 기준(용량, 구조, 배열 등) 강화
- 생물반응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용적부하량 기준 설정
-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보강 시 보강 재질을 콘크리트로 한정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1

공공하수도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 ▶ 기존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모두 등록할 경우 각 업마다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추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장비 중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통장비)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 15종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배경

공공하수도 관련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공통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1

부득이한 경우,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의 예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자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는 하수처리수의 수질 확보를 위해(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②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 또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③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를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보도·설명>“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추진배경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폐수 처리의 효율 제고

주요내용

- 부득이한 경우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기술의 연구·시험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일

2025년 5월 23일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1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평가 절차를 이행합니다.

※ 심층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 공청회 의무(대면 또는 비대면)
신속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 환경보전방안 마련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25. 6. 12.~7. 22.)”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추진배경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 (대상 결정) 자연환경(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사업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환경영향 대, 신속평가(환경영향 소) 대상 결정
- 환경영향 대 → 심층평가: 공청회 의무, 환경정보 제공 등 환경부 지원
- 환경영향 소 → 신속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생략, 환경보전방안 마련
- (평가 절차)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결정 사업은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 미결정사업은 현행 평가 절차 적용
-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예정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정규모) 야생동물 영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5. 6. 25.~8. 4.)”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추진배경

국내에서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의 관리 강화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상업종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인공증식 후 판매)·위탁관리업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의 수입·유통 관리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강화됩니다.

- ▶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 등이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통칭 '백색목록')* 신설
* (백색목록 예시) 미어캣, 인도공작, 크레스티드게코 등
- ▶ 이 목록에 해당하는 종을 수입·반입 등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식용 등 목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은 종은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5. 6. 25.~8. 4.)”**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추진배경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출현으로 인한 인명·경제피해 발생, 야생동물 유기 및 생태계 교란 등 문제방지 위해 국내 유입 야생동물의 추적·관리 강화

주요내용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이 가능한 목록 신설
- 동 목록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3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신고물질의 적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고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주고, 필요시 정부에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 ▶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등록 물질뿐만 아니라 신고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게 되며, 누구든지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확보한 경우, 수정·보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와 함께, 유해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 ▶ 아울러, 기존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정의가 세분화*되어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이를 통해 소량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화학물질 관리 개선(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관리 차등화)

주요내용

- 신고자료의 공개 → 수정·보완 및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및 관리원칙 신설
- 유독물질을 유해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세분

시행일

2025년 8월 7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27

갯벌의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교육·홍보·생태탐방 안내 등 해양생태관광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 (양성기관 추가지정) 현재 운영 중인 양성기관(1개소:서울에너지드림센터) 외에 2~3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전문적인 갯벌생태해설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 (간이과정 운영) 종전의 단일한 교육과정(80시간)을 기본(80시간) 및 간이(30시간*) 교육과정으로 구분 운영하여 갯벌생태해설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유사자격 보유자에 한해 수강 가능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지정 및 간이과정 운영

추진배경

갯벌생태 해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주요내용

- (양성기관 추가지정)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추가지정(현재 1개소 → 변경 2~3개소)
- (간이과정 운영)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간이(30시간) 교육과정 추가운영
(당초 : 단일 80시간, 변경 : 기본 80, 간이 30시간)

시행일

- (양성기관 추가지정) 2025년 하반기
- (간이과정 운영) 2025년 하반기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기상청 해양기상기후과

☎ 042-481-7406

기상청은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전문 기후예측분석관이 분석한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을 11월 23일부터 시범 서비스합니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2024. 10. 25. 시행)에 따라 해양 기후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업무 법적 의무화

- ▶ 해양 전문 기후예측분석관을 통해 사용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수치모델 기반 예측정보의 한계를 보완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실용적인 정보로 제공합니다.
 - 매월 23일(월 1회),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전망 발표
 - 한반도 주변 해역을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여 3분위(평년대비 낮음·비슷·높음) 정보로 제공

보다 공신력 있는 해양 기후예측 정보를 서비스하여 관계기관 및 수요자의 활용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추진배경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기후예측 분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해양에서의 기후예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내용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에 어민, 수산업, 정부부처 등 해양분야에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기후예측 서비스를 시범 운영

시행일

2025년 11월 23일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해역 확대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어선의 안전 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를 어업인 등 국민들께 제공합니다.

- ▶ 지난 겨울철 시범운영(2024. 12.~2025. 3.) 시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정보를, 올해 10월부터는 먼바다 전해역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합니다.
-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풍랑주의보 통보문에 경보 상향 시점을 제공합니다.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제공 확대

추진배경

해양 선박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라 피항 및 운항계획 수립 등 선박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주요내용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풍랑주의보 통보문에 포함하여 제공

시행일

2025년 10월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여름철 호우 대상으로 발송되던 재난문자를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에도 신규로 제공됩니다.

- ▶ 호우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설 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보구역 단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추진배경

대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 국민 안전 및 편리를 위해 대설 재난문자 제공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대설 발생 시, 해당 특보구역(시·군) 단위로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발송

시행일

2025년 11월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 042-481-9601

기후위기 시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2025년 12월에 확대 제공합니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www.climate.go.kr/atlas)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

- ▶ 기후위기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과거-현재-미래의 기후상황과 사회 분야별 미래 영향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 미래 전 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시·군·구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정보
 - *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 수준별 4종: 1.5, 2.0, 3.0, 5.0 °C
 - 태양광 발전량, 유역별 극한강수량 등 사회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정보
 - 연별로 제공되던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극한기후지수(폭염·한파일수 등 27종)를 월·계절별 정보로 확대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미래 대비를 위한 기후변화 예측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예측정보의 필요성 증대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서비스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
- 월·계절별 미래 극한기후지수 상세 제공, 기후변화 영향정보 확대 제공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기상기후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42-481-7475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요구에 따라 다변화되어가는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 맞춤형 API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 필요한 기상요소만 선별하여 산업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를 에너지, 수자원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분야에도 확대합니다.
 - ※ 예시 1. 농업 분야에는 서리, 일사, 지중온도 데이터 우선 제공
 - 2. 교통(육상·해상·항공) 분야에는 풍향, 풍속, 파고, 난류, 지면온도 데이터 우선 제공
- ▶ 또한, 농업 및 교통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만 모아 서비스하는 분야별 특화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합니다.

기상행정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필요한 기상기후데이터를 한번에, 분야 맞춤 API 서비스

추진배경

기상기후데이터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대응 기상정보 지원 체계 구축 및 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가치 창출

주요내용

(산업 분야별 특화 API 서비스) 농업(기온, 일조, 증발량), 교통(육상, 해양, 항공) 등 사회·산업 분야별 특화된 데이터만 모은 API 서비스 시작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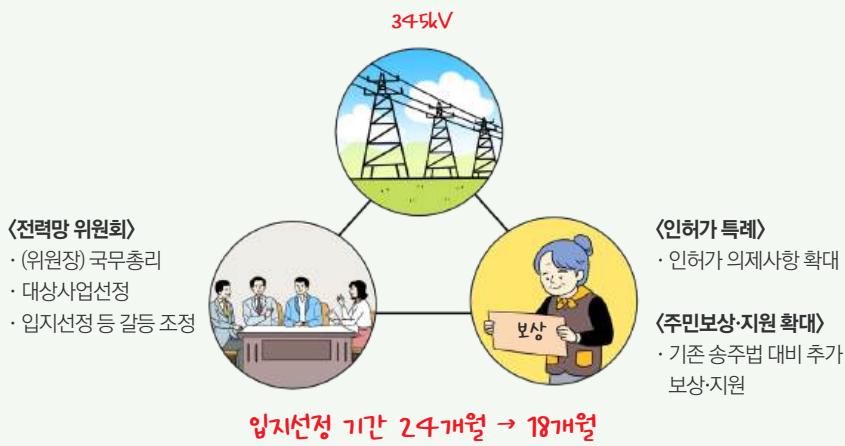
0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073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

-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하여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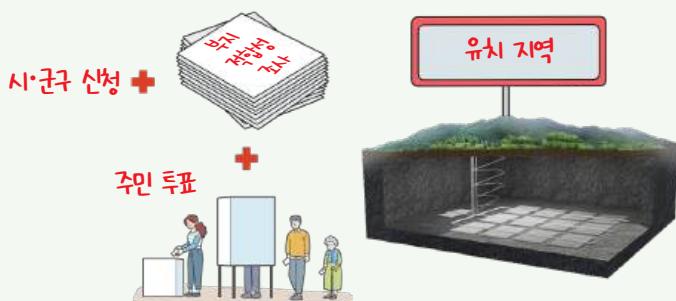
0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074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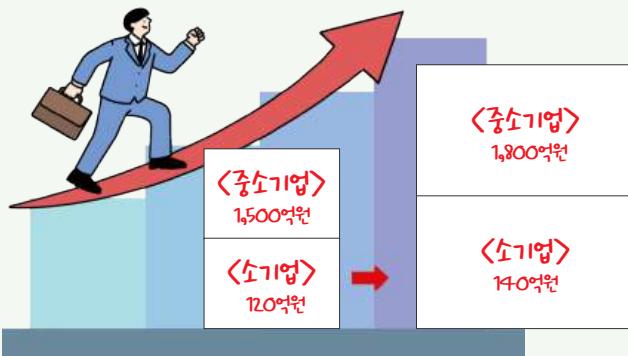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관리시설 부지선정 : 시·군·구 신청 → 부지적합성(기본·심층) 조사 → 주민투표
 - 유치지역 지원 계획 수립 :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등
 - 전담조직 신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부지 내 저장시설 :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역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시행일 : 2025년 말

- 생산원가 급증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출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개편합니다.
 - 매출기준: (중소기업) 1,500 → 1,800억원 / (소기업) 120 → 140억원
 - 매출구간 수: (중소기업) 5 → 7개 / (소기업) 5 → 9개
 - 매출 상한 확대업종: (중소기업) 16개 업종(현행 대비 200~300억원 확대)
(소기업) 12개 업종(현행 대비 5~20억원 확대)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수혜 지속 가능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

☎ 044-202-4661

**본 법 시행(2025. 9.)으로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이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되고, 대형가속기 분야 진흥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안정적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 ▶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서, 기초연구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분야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입니다.
*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양성자, 전자, 이온 등의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
- ▶ 기존의 대형가속기별 부지 활용을 위한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이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 될 예정입니다.
* (양성자가속기) 기본 20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0년, 방폐물 유치지역법)
(중이온가속기) 기본 50년, 연장횟수 제한없음(반영구적 사용가능, 국제과학벨트법)
- ▶ 또한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법령상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대형가속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누리집>보도자료>「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대형가속기법 주요내용

추진배경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지원을 위한 법률

주요내용

- (토지 대부기간 일원화)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
* 양성자가속기 - 기본 20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0년, 방폐물 유치지역법)
중이온가속기 - 기본 50년, 연장횟수 제한없음(반영구적 사용가능, 국제과학벨트법)
-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법령상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

시행일

2025년 9월 19일부터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044-203-393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2025. 9.26.)됨에 따라,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하여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합니다.

- ▶ (대상)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 지정 설비
- ▶ (전력망위원회*) 대상사업 선정, 갈등조정(입지선정 등) 등 실시
 - * (위원장)국무총리 / (위원)주요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국회 및 총리 추천) 등 35인
- ▶ (특례·보상)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입지선정 기간 단축(24개월 → 18개월) 등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부대공사(진입로·작업장 등) 인허가 특례 등
 - * 기준 18개(도로법, 하천법, 국계법 등) + 신규 17개(백두대간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허가 등)
 - 주민 보상·지원 확대* 및 전력망 경과 지자체 지원 신설
 - * 기존 송주법 대비 추가보상·지원, 선하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 ▶ (사업자) 송전사업자(한전)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시행

추진배경

사업시행자(한전) 단독 추진으로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대응 부족 및 전력망 건설 지연

주요내용

-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입지선정 기간 단축(24개월→18개월) 등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044-203-5343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 ▶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며, 신설되는 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합니다.
- ▶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부 누리집>보도자료>고준위 특별법국무회의 의결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추진배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을 위한 관리시설 확보 필요

주요내용

- (관리시설 부지선정) 시·군·구 신청 → 부지적합성(기본·심층)조사 → 주민투표
 - * 기본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 협의 등 필요
- (유치지역 등 지원)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등 지원 명시
-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역지원 방안 마련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 044-203-4854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 ▶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①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③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 ▶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①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③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시행

추진배경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 중심 기술 유출의 지속적 증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 기술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 -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등
- 국가핵심기술 관련 벌칙규정 및 기업 지원 강화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44-200-6221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https://badabom.go.kr>)이 2025년 12월 구축 완료됩니다.

- ▶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3개 시스템*에 각각 접속하여 기술인증평가, 기술거래 등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스템, 창업투자정보 시스템
 -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사업화 시스템 3종을 통합하여, 바다봄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기술인증평가와 기술거래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와 ‘바다봄’ 사이트 간 정보를 연계하여 연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동하여, 신기술 보유기업이 공사실적을 쉽게 관리하고 조달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 개선 사업 추진

추진배경

KIMST 사업화 시스템 통합 및 통계정보 관리 고도화 필요

주요내용

- KIMST 사업화 시스템 3종*을 통합하여, 원스톱 신청 체계 구축 및 각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R&D 성과 상용화 강화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 기술거래 시스템, 창업투자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와 바다봄 간 정보연계로 통합 DB 설계 및 통계 서비스 개발
-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정보를 나라장터에 연동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의 공사실적 관리 지원 및 조달 입찰 시 활용

시행일

2025년 12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44-200-5871

**소상공인·소기업이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될 경우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 ▶ 기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었으나,
-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소기업은 60일, 소상공인은 90일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일정기간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항로표지법 제26조 제1항 4호 개정(2025. 10. 시행예정) 및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추진배경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주요내용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소기업 60일, 소상공인 90일)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

시행일

2025년 10월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576, 7454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합니다.

-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합니다.
- ▶ 또한,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여,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합니다.

이로써, 전체 804만 中企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 수혜가 가능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2025. 5. 1.)”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추진배경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 기준 현실화
* 국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

시행일

2025년 말

참고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 업종

중소기업 범위조정 업종: 44개 중 16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중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	현행	개편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	1,800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000	1,200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800	1,000
J	정보통신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600	800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조정 업종: 43개 중 12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업종	현행	개편안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120	140
C24	1차 금속 제조업		
H	운수 및 창고업	80	100
K	금융 및 보험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6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30	40
L	부동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15
I	숙박 및 음식점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1, 7505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AI 챗봇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합니다.

- ▶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 (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설명회)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관세 정보제공: 수출 품목 관세율, 원산지 판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 *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 신설
 - ** 애로사항 접수나 정부지원 요청건은 애로신고센터 및 관세대응지원본부 연계
 - 관세 심층상담: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심층 상담 요청 시, 관세법인과 연결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 전문상담: HS-Code 품목분류, 기업 수출 제품 원산지 간이분류, 관세정보 제공 등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추진배경

美관세 부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애로 지원 필요

주요내용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KTR)을 통해 관세·비관세 수출규제 정보제공및 상담 지원→
AI 챗봇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시행일

2025년 6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 044-204-7501, 7505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합니다.

- ▶ (GBC) 관세 피해기업 입주 신청 시 최고 수준 가점(5 → 10점) 부여하고, GBC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관세 피해기업을 우대합니다.
 - 입주 대기시에도,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및 공유좌석 단기 사용(최대 120일) 허용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
- ▶ (KSC) 통상장벽을 피해 해외 직접 진출*을 희망하는 서비스 수출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 * 수출 스타트업 중 27%만 해외 거점을 마련하여 직접 진출중 (KITA, '24.5)
 - K-스타트업 센터(KSC)를 통해 현지 법인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 지원 등 지원 확대
 - 특히, 신설되는 'KSC 실리콘밸리'에서 AI 등 신산업 분야 AGVC 연계, 글로벌 테크기업 협업 등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美 상호관세 발표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2025. 5. 14.)”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

추진배경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 센터(KSC) 활성화

주요내용

- (GBC) 관세 피해기업 입주 신청시 가점 부여(5 → 10점) 등 관세 피해기업 우대
- (KSC)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지원 등 지원 확대

시행일

2025년 4월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042-724-6316

혁신기술만 있으면 공장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협업 기업수를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R&D 기업들이 납품 여건 및 기업 상황에 맞춰 생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W 혁신기술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융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융복합 SW 혁신제품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 SW 기술이 적용된 물품 종류마다 개별로 혁신제품을 인정받을 필요없이 기존 지정된 혁신제품에 규격만 추가하면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요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회를 확대합니다.

- ▶ 기존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된 단가계약 체결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를 허용하고, 5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구매한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제도 숨은 규제 개선

추진배경

혁신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

주요내용

- 협업체로 참여 가능한 제조기업 수를 당초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 운영
- 융복합 SW 혁신제품은 동일 세부품명이 아니어도 규격추가를 허용
- 단가계약 제품에 대해 해외실증 시범구매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고 소액 시범구매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 신청 가능

시행일

2025년 6월 10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30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이하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시 위탁구매 해주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상사업) R&D 중심형 협업사업,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사업,
우수단체표준(5개)

- ▶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배경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매실적 개선 등을 위해, 업계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의 대상금액 상향 건의

주요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개정) 위탁구매 대상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프랜차이즈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통계청 산업통계과

☎ 042-481-2187

통계 작성의 효율성 제고와 조사대상처의 응답 부담 최소화를 위해 프랜차이즈통계를 기준 조사통계에서 가공통계로 작성 방법을 변경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국세청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행정자료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 ▶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통계조사원이 표본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조사 미실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가공통계 전환으로 2024년 프랜차이즈조사 표본 25,306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응답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프랜차이즈통계」는 2025년 10월 중 국가승인통계 변경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중으로 2024년 기준 집계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누리집>통계조사>통계청 통계>분야별 보기>도소매·서비스>프랜차이즈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가공통계로 전환

추진배경

- 프랜차이즈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행정자료 구축
- 현장조사 미실시로 예산 절약 및 사업체의 조사 응답 부담 감소

주요내용

-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항목 및 업종 개편으로 프랜차이즈통계 이용자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보 제공

시행일

2025년 12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8227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납니다.

※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화)

-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2일(화)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합니다.
- ▶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 상향 시행

추진배경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 및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주요내용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981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조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 ▶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 ▶ 한편, 정보제공제도 및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 연장(30일) 제도 등을 통해 제3자 의견제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며 상표등록제도가 균형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추진배경

심사종결기간 단축을 통한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

주요내용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건부터 적용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특허청 특허제도과

☎ 042-481-5736

그간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수출을 추가합니다.

- ▶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 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발명실시에 수출추가 및 국방상 비밀특허에 벌칙신설

추진배경

특허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주요내용

- (발명의 실시에 수출추가) 발명의 실시에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는 특허된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국방상 비밀특허에 벌칙 신설) 국방상 특허에 대한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규정 신설

시행일

- (발명실시에 수출추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출행위부터 적용
- (국방상 비밀특허에 벌칙신설) 2025년 7월 22일 이후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행위 추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981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상표법 개정안 시행일: 2025년 5월 27일(화)

- ▶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위조상품이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하면서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습니다.
 - 2024년 해외직구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상품이 약 40%(1,080건)로 우리기업의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 ※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물품(관세청): (2022) 6만건 → (2024) 8.7만건
- ▶ 이에 ‘공급’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추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추진배경

국내 상표권자의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명확화

주요내용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추가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특허제도과

☎ 042-481-5766

올해 11월부터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이 없거나 선출원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으면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패션·잡화 등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는 신규성과 선출원 심사 없이 방식 요건 및 한정적인 실체심사로 신속하게 등록

- ▶ 일부심사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여 도용된 권리의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의 심사강화 등 디자인제도 개선 시행

추진배경

-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 및 정당권리자의 보호 강화
- (일부심사강화) 일부심사출원에 대해서는 신규성·선출원 거절이유에 대해 거절 불가 →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거절 이유는 거절 가능
- (이의신청)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또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용된 디자인권을 법원에 이전청구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

시행일

- 2025년 11월
- (일부심사 강화 및 이의신청)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출원부터 적용
- (디자인권 이전청구) 개정법 시행 이전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특허청 특허제도과

☎ 042-481-8153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

- ▶ 기존에는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짧고, 출원인이 의견서제출기간 내 검토·대응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출원인에게 절차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 주요국 의견서제출기간: (한국) 2개월, (미국·일본) 3개월, (중국·EPO) 4개월

**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개월) 2만원, (1~2개월) 3만원, (2~3개월) 6만원, (3~4개월) 12만원, 이후 초과 1개월마다 24만원

- ▶ 이번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으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및 금전적 부담완화가 기대됩니다.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추진배경

출원인의 충분한 검토기회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및 금전적 부담완화 필요

주요내용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기간 연장(2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구체적인 의견서제출기간은 「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을 통해 규정

시행일

2025년 7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46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4(2025. 10. 2.부터 시행)

- ▶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아래의 부당특약은 곧바로 무효가 되고,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소식·뉴스>보도자료>‘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 3. 16.)’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추진배경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규정이 「하도급법」에 없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주요내용

「하도급법」 개정으로 아래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됨

- ①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 ②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 그 외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상 부당특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 →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입증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0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095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규격표준화 승인 이후 도입 예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낮은화면, 음성안내 기능 등이 가능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를 수도권에 100여 대 이상 도입합니다.



0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096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임대주택 제도 외에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044-201-397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개발한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철도기관(코레일, 철도공단) 개별 도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 하반기 자동발매기 표준화 및 기능 개선을 하여 수도권에 100여대 이상 도입될 예정입니다.

-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으로 환급시 별도 환급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 또한,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 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아울러, 전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1회권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 및 카드 자동살균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추진배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자동발매기 표준화 및 기능 개선

주요내용

- 휠체어 접근 가능, 모니터 밝기 개선 및 돋보기 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음성안내 반영 등 교통약자를 위한 규격 표준화
- 다양한 결제 기능, 1회권 카드 자동살균 기능 추가 등

시행일

2025년 하반기 규격표준화 승인 이후 도입 예정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77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 최근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이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6년)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2020년 8월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

이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비(非)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 6월4일 시행(등록일 2025. 5.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추진배경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2024. 1. 10.)

주요내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준주택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시행일

2025년 6월 4일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0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천㎡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 ▶ 이를 통해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하기 용이해지고, 관련 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추진배경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기재부, 2024. 3. 28.) 추진 과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2023. 9~)

주요내용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공유보관시설* 중 연면적 1천㎡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주 가능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화재안전을 위해 내부 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시행일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2025년 4분기 시행령 공포 이후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044-201-3485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합니다.

- ▶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에 대하여 좌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사업시행 초기에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정확한 토지경계 및 수치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 ▶ 사업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으로 추가보상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예방하고, 사업완료 시 면적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지적확정측량 행정예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추진배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하여 확대 시행

주요내용

지적확정측량 시 예정지적좌표를 의무화함에 따라 사업지구계에 대한 정확한 위치 면적 산정으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 및 소송 사전 예방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044-201-3438
☎ 044-201-4947

그간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 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하며, 계열사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추진배경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주택공급 차질 해소를 위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추진

주요내용

-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전매 가능
-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계약시점 2년 초과 시 한시적으로(1년간) 전매 가능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공포·시행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044-201-4825

2025년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되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됩니다.

* (1차)2024년 6월 1편성, (2차)2024년 8월 2편성, (3차)2024년 9월 2편성, (4차)2025년 3월 1편성

** (최대혼잡도) 2023년 10월 1주~3주 215% → 2024년 10월 1주~3주 187%

- ▶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어 시민들의 출퇴근 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 ▶ 또한, 2026년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하여 혼잡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

추진배경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

주요내용

- (증차 계획) 2026년 12월까지 차량 11편성 순차적 증차
- (그간 실적) 2024년 6월 1편성 증차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편성 증차 완료
- (1차)2024년 6월 1편성, (2차)2024년 8월 2편성, (3차)2024년 9월 2편성, (4차)2025년 3월 1편성
- (혼잡도 개선) 증차 전 215% → 증차 이후 190% 이하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044-201-3889

지역 간 연결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산업단지·물류 지원 등 간선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55.1km, 2025. 12.)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여 낙후된 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합니다.
- ▶ 아울러,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30.9km, 2025. 12.)을 통해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하고,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합니다.
- ▶ 또한, 부산신항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2025. 07.),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2025. 12.)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착공합니다.

2025년 간선도로망 추진 현황

주요내용

- (개통) 지역 간 연결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중 사업을 진행 중인 새만금–전주,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적기 개통

연번	사업명	시설 규모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공사기간	개통예정일	비고
	2개 사업		86.0	41,901			
1	새만금–전주	4신설	55.1	25,889	2018. 05.~2025. 12.	2025. 12.	
2	포항–영덕	4신설	30.9	16,012	2016. 08.~2025. 12.	2025. 12.	

- (착공)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 미착수 주요구간 사업 착수

연번	사업명	시설 규모	연장(km)	총사업비(억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비고
	2개 사업		42.7	43,212			
1	부산신항–김해	4신설	12.8	14,060	2025. 07.~2029. 12.	2025. 07.	
2	계양–강화	4신설	29.9	29,152	2025. 12.~2031. 12.	2025. 12.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044-201-3952

전라남도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82.5km) 구간을 2025년 9월 개통합니다.

- ▶ 철도 미구축 구간인 보성~임성리 지역의 철도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하여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이동권을 확보해주며,
- ▶ 공모 설계를 통해 신설되는 6개*의 역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토록 건설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신보성역, 장동역, 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염암역
- ▶ 경상도와 전라도 간 남해안을 따라 열차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하여, 환승 없는 편리한 이동으로 철도 이용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보성~임성리 단선전철 개통

추진배경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하여 철도이용자 이동편의 제공

주요내용

- 사업구간: 보성~임성리 간 단선전철 건설(82.5km)
- 총사업비/기간: 1조 6,459억원 / 2002년~2025년

향후계획

2025년 9월 30일 개통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044-201-4617

자동으로 철도 범죄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AI CCTV를 확대하겠습니다.

- ▶ (현황)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 101개~주요역사에 1,552대 설치 완료(~2024. 12.)
(계획)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 예정(~2025. 12.)
- ▶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넘어짐·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안면·옷차림 등을 인식하여,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AI CCTV를 활용하여 총 161건 범죄 중 135건 검거 완료
- ▶ 안전하고 범죄 없는 철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내 AI CCTV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역사 내 AI CCTV 구축

추진배경

철도범죄 예방 및 신속한 용의자 검거

주요내용

- 지능형 SW/HW를 통한 용의자 객체 인식, 이상행동 탐지기능 등을 활용한 AI CCTV를 구축·운영

*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 AI CCTV 1,552대 설치 완료(~2024. 12.)

** GTX-A, 수인분당선 등 AI CCTV 400대 설치 예정(~2025. 12.)

- 철도경찰범죄종합상황실 및 주요 철도경찰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용의자 검색으로 성범죄, 재산범죄 등 철도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그동안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차365'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성을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 또한, 자동차등록증 등 6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

추진배경

노후화 시스템(H/W, S/W) 전면 개선 및 자동차 등록 민원 편의성 증대

주요내용

- 자동차 등록민원을 전자서식을 이용해 모바일환경에서도 처리가 가능
-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체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 자동차등록증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실물서류 대신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이 가능

시행일

2025년 6월 9일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044-200-6202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 기술의 해상 실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 ▶ 민간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실증에 앞서 「자율운항선박법」 제19조에 따른 선박·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도평가, 도면평가, 현장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평가 결과서 발급

평가는 법정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에서 실시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는 국비 지원예정입니다.

- ▶ 2025년 7월, 평가 대행기관 설명회 개최 및 평가 사업 공고를 통해 평가방법,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사업공고 예정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추진배경

자율운항선박 안전성평가 사업을 통해 안전한 실증을 지원하여 핵심 기술개발 촉진

주요내용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위험도 평가·도면평가·현장시험 수행 등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자율운항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서 발급
- 민간의 해상실증 참여 확대,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수수료는 국비 지원

시행일

2025년 7월 이후(별도 안내 예정)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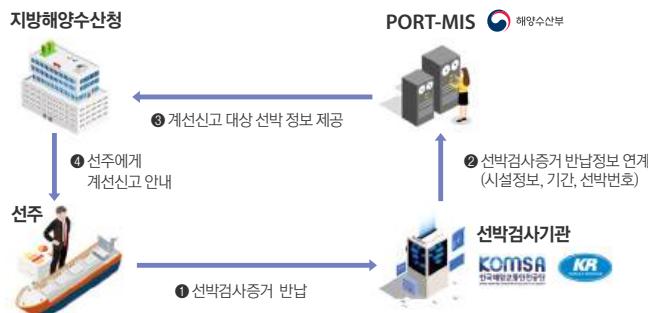
☎ 044-200-5775

2025년 7월부터 선박검사기관*에 검사증서를 반납할 경우 반납 정보가 지방청에 실시간 연계되어, 소관 11개 지방청에서 선주에게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계선신고를 안내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 그간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증서를 반납받을 경우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선주의 신고 미이행으로 무단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기계류선박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타 선박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리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위해 계선시설 현황과 절차를 안내하고, 계선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를 구축 시행합니다.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추진배경

무역항 내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통한 선박의 무단방지 방지 추진

주요내용

- (선박검사증서 반납 즉시 확인) 2025년 7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 면제를 위해 선박검사기관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소관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으로선 선박검사증서 반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계선가능 시설 안내) 선박검사기관에서도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선주에게 소관 관리청에서 지정한 계선 가능한 시설정보 안내

추진일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9

평택·당진항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5년 10월까지 항만배후단지 67만㎡를 추가로 조성하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금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공급되는 항만배후단지 67만㎡ 중 민간이 취득할 수 있는 19만㎡에 대하여 별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 ▶ 다만,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항만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개발사업

추진배경

항만의 부가가치 향상과 임대방식의 항만배후단지 활용의 한계 해소를 위해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을 도입 실수요자 위주 개발

사업개요

- (위치/조성면적)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전체 113만㎡(2구역 67만㎡)
- (총사업비/공사기간) 1,972억 원/ 2021년 6월~2025년 10월(착공일로부터 48개월)
- (토지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사업시행자/출자자) (주)경기평택글로벌/(주)GS글로벌외 6개사

사업위치도 및 평면도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2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 ▶ 공사비의 예정가격 산출 방법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의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 등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도 추가합니다.
*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 ①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②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③견적가격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적정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만건설공사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항만건설공사 현실화를 위한 '설계실무요령' 관리 규정 마련

추진배경

건설투자 감소로 경영학화, 일자리 급감 등 건설경기 전반악화 지속되어 건설공사를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주요내용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설계실무요령'은 관련 절차나 제·개정 기준 등이 없어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록 하여 현실적인 건설공사비 마련 추진

시행일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개정(2025. 06. 13. 시행)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0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5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시행일 : 2025년 6월

-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0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행일 : 2025년 6월

-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됩니다.
 - 지자체의 농지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농지전용 권한위임
국가 → 지자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시행일 : 2025년 6월 2일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10→5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 2025년 12월 21일

-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푸드테크〉



세포비양식품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3차원식품프린팅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 추진 체계 마련

신고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0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9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시행일 : 2025년 5월 29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축산물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6.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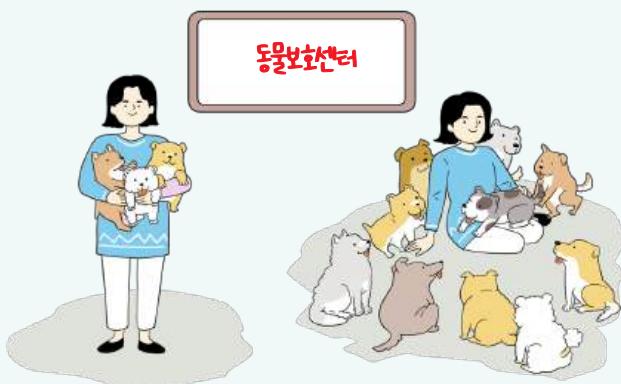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20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시행일 : 2025년 7월

-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1인당 더 많은 동물(3→10마리)을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시행일 : 2025년 8월

-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시)에 함께 게시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http://kafb2b.or.kr>)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이 활·선어 등 129개 품목까지 확대됩니다.



09.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34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 노지 내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신규 편입됩니다.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35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2025년 10월부터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에 따라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 ▶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 아울러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해당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설치 가능
- ▶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2.0), 관광농원(2.0㏊→3.0)

농지법 주요내용

추진배경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2.0), 관광농원(2.0㏊→3.0)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9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 「농지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살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의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법 주요내용

추진배경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의 범위 확대 필요

주요내용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 추가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 ▶ 2025년 6월부터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10→5)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법 주요내용

추진배경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등의 요건 완화(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10→5), 농업법인 단독 시행 가능)

시행일 2025년 6월 2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됩니다.**

- ▶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아울러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검색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추진배경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

- (정의)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혁신클러스터' 각각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 (추진체계) 푸드테크 관련 정책·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단위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 마련
-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3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는 동물 질병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질병에 대해 청정국 또는 청정지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

- ▶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11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1년간 구제역 비발생 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기본 조건 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추진배경

우리나라 방역정책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기반으로 국산 축산물 수출 기회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시행일

2025년 5월 29일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23

2025년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됩니다.

- ▶ 당초에는 1인당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하였던 것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입양희망자가 제출한 기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이 활성화되고,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추진배경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로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인식개선

주요내용

-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금지 규정 완화하되, 자격요건 등 강화
- 기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는 경우 10마리까지 입양

시행일

2025년 7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3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됩니다.

- ▶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 ▶ 그러나,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며,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경우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 ▶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동물병원 간 비용 비교가 편리해져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추진배경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추진

주요내용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의 게시 방법 개선

* (기존)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개선)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일

2025년 8월

* 다만, 게시방법 변경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0월까지 계도기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부칙 제2조)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2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됩니다.

- ▶ 건강·환경·농업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주간’ 지정은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추진배경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확산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주요내용

·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

· 식생활 교육 정책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박람회·전시·학술행사 등 추진

시행일

2025년 9월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3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2025년 9월 19일부터 강화합니다.

- ▶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 또한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검역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이를 통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 등의 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추진배경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검역신고 지연)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검역신고 의무 위반) 판매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38
☎ 044-201-2187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 11종의 기능성원료 적용기준·규격 마련과 이를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생산 실증을 지원합니다.
-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유공장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시장을 실현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배경

식품산업 고부가가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

주요내용

-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 일반식품에 적용가능한 기능성원료 확대를 위한 안전성, 기준 및 제품개발 추진

-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마련

시행일

2025년 5월 30일(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55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4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0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되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합니다.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험열읍 외리 1549-1 (함열농공단지 내)
(사무실) A타입(148㎡, 45평), B타입(68㎡, 22평), C타입(38㎡, 12평)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하여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2025년 9월부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9월~)>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추진배경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기업 촉진 및 보육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그린바이오 기업 전문 보육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2025년 하반기 준공되어 입주기업 등 모집
- 입주기업 대상 특화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협업 상품 개발, 유통채널 입점, 연구장비 공동 사용 등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예정

시행일

2025년 9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70

2024년 시범 도입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주방보조와 훌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훌서빙까지 확대합니다.
- ▶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7. 7~18.)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추진배경

음식점업 특성상(소규모 인력 운영, 업무 연속성 등) 현장은 주방보조와 훌서빙 인력이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으며, 유학생(D-2)-방문취업(H-2) 등 다른 비자 외국인력은 훌서빙 등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확대) 훌서빙 가능
*(당초) 주방보조원 → (변경)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시행일

- [기존 도입 사업장] 당사자(사용·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 수정 후 바로 *별도 신고 절차 불필요
- [신규 도입 사업장] 개선된 요건이 적용된 신규 신청은 2025년 3회차 신청·접수(7. 7~18.)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2025년 상반기, 7년 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였으며, 인상한 단가로 올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체계 변화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950	500→750	350→570
밭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과수	1,400	1,200

- ▶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하여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바) 2024년 10월 31일 기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된 필지 중 사업 신청기간(3~4월 및 추가 접수
8~9월)에 신청,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2025. 2. 9.)”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추진배경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면적 및 농가수 지속 감소 추세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 논: ha당 +25만원
- 유기지속(유기 6년차): 유기 단가의 50→60%
- 유기전환기(유기 인증 전 3년): 무농약 단가→유기(지속)
-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확대: 기존 0.1~5.0ha → 0.1~30ha

시행일 20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적용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5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 휴경지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이 의무였으나, 경사지의 경운이 어렵고 토양침식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경운 외에 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다른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 또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는 제외하고 농업인 의무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대상자의 교육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필요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활동, 휴경지관리 방법 등 실효성 및 농가불편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준수사항 폐지·완화
 - (휴경지 관리) 경운 외에 잡목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도 휴경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동체 활동)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준수사항 폐지
 - (의무 교육)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5년 6월 2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044-201-2322

국산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합니다.

- ▶ 20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 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발급 언어도 기존 5개에서 품목별 주요 수출국에 따라 총 11개 언어*로 확대하고, 한국어만 병기되던 외국어확인서에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통) 영어, 중국어(보통어), 중국어(광동어), (소·돼지) 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돼지)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꿀) 일본어, 힌디어

외국어확인서를 해외 유통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수출업체의 수출 협상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축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합니다.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추진배경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개요

-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신설

시행일

2025년 5월 22일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6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됩니다.
- ▶ 또한,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합니다.
- ▶ 이 외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공포일(2025년 7월 중)로부터 3년 후 시행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추진배경

최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에 한하여 별도의 표시기준을 신설

주요내용

- 반려동물(개, 고양이)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체계 개선
-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
-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시행일

2025년 7월 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0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2025. 5. 20. 개정·시행)

- ▶ 당초 2차 실기시험 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우자의 개’로는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 소유의 개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예정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전문가 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추진배경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시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시험 응시요건 완화 필요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 개정

* (당초)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 (개정)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

시행일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

*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은 자격시험 공고 참조(2차 실기시험은 2025년 9~11월 시행 예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044-201-2187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 건축물 안에 여려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 수직농장은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농식품부 2024. 7.),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2024. 11.),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산업부, 2024. 11.)
- ▶ 이에, 농식품부 주관 관계기관(익산시,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제도개선(조례 개정,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됩니다.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추진배경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2024. 11.)되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도시계획조례 개정(익산시), 실시계획 변경(국토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시행일

2025년 하반기 실행계획 변경 완료 후 즉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0-5057
☎ 044-201-221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http://kafb2b.or.kr>)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이 확대됩니다.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 60개 → 129개(활·신선수산물 등 추가, 2025년 하반기)

- ▶ 2025년 상반기까지는 저장성이 높고 규격화되어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냉동, 건어물 위주로 거래 가능 품목을 선정하였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장 요구 등을 반영하여 활·신선수산물 등 거래 가능 품목 확대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추진배경 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거래 가능 품목 확대 요구 등에 따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단계적 확대) 냉동원물, 건어, 수산가공품 등 온라인 유통이 용이한 품목을 우선으로 활·선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거래 활성화 도모

* (계획) 60개(2024. 11.) → 129개(2025 하반기, 활어 등 추가)

시행일 2025년 하반기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2025년 4월 1일부터 노지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 2025년 신청·접수 기간(5. 1~7. 31.) 동안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요건 등 자격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잊지 말고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추진목적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영세한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및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개정사항)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
- (지원대상/지원금액) 소규모어가 / 130만원(연간)
- (절차)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5년 4월 1일

추진일정 직불금 신청·접수(5~7월)→ 자격검증(8~11월)→ 직불금 지급(12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6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합니다.

- ▶ 지난 2월 당정협의회 안전사고 방지대책 보고에서 '전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가 발표(2025. 2. 21.) 되었으며,
- ▶ 2025.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2025. 10. 19.)되며 향후 전 어선원으로 의무 착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자부담 40%로 구매했다면, 금년 6월부터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신규사업을 통해 자부담 20%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국비30%/지방비40%/자부담40%) → (개선)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참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신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배경

현재, 기상특보 발효 시 노출갑판 조업자만 의무 착용에서, 2025년 10월부터 기상특보 무관,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의무 착용(10.19.), 향후 전 어선원으로 의무 착용 예정

주요내용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4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강화를 위해,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정의' 및 '신고절차' 등 관련규정이 마련됩니다.

- ▶ 2025년 10월 23일부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먹는해양심층수 제품 중 상당수가 유통전문판매업자에 의해 판매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신고가 거부되는 등 업계 혼란을 초래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1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하여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는 가두리·축제식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으나,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낚시터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 앞으로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춰서 유어장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개정 이후 6개월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정책자료>법령정보>「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 허용

추진배경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수상낚시터(유어장) 지정 신청 절차와 시설 면적 등 유어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2025년 12월 중)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1

어업면허, 어업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폐지합니다.

*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 어업인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은 폐지하고,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4.3.27)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일부 폐지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 기업 부담 낮춘다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추진배경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 3. 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성금은 부과항목 일부 폐지
* 정부발의(2024. 7. 26. 발의)

주요내용

어업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폐지

시행일

2025년 4월 22일(「수산자원관리법」)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8

그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별도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 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가 제외됩니다.

- ▶ 2025년 6월 21일부터 낚시어선업자가 해당 낚시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승선자명부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가 제외됩니다.

해양수산부>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제외

추진배경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 제외

주요내용

낚시어선업자가 해당 낚시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승선자명부에서 전자적 형태(낚시해 앱 등)로 작성된 문서는 제외

시행일

(전자문서로 된 승선자명부) 2025년 6월 21일 작성 분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53

그간 어선 건조는 일정 자격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 어선설계 및 건조 가능하였으나,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유도하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 ▶ 2025년 12월 21일부터는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어선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어선 개발·시설의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어선 건조·개조업 진행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추진배경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건조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 미비

주요내용

- 어선 건조 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증개축 시에는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노력 병행하여 안전 강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 044-200-5605

수산업법 일부 개정(2025. 4. 22)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자기 완결적 신고)하였습니다.

- ▶ 기존에는 어구를 생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수리하였지만,
- ▶ 2025년 7월 23일부터 어구의 생산 및 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규제개선

추진배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주요내용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5

2025년 7월 5일부터 도롱농항아리곰팡이병 등 양서류 질병 3종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 수입검역은 수산생물을 수입 시 해외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수(水)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양서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살아있는 양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검역당국에 제출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법정전염병)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농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수입검역 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검색

양서류 수산생물전염병 지정

추진배경

양서류의 법정전염병 지정으로 질병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생태계 및 공중보건 안전 확보

주요내용

양서류 법정전염병(3종) 추가 지정

-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농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시행일

2025년 7월 5일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수산부산물을 중간 수집 없이 운반만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합니다.

- ▶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대상 규제 완화를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의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7. 2. 시행)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수산부산물 단순 운반업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추진배경

수산부산물 단순 운반업자 대상 규제 완화

주요내용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시행일

2025년 7월 2일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83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어린개체(알·치어)부터 중간육성 개체까지 폭넓은 육성·지원을 위해 수산종자의 정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존) (수산동물) 정액, 알, 치어, 치째, 어린 개체
* (수산식물) 쌈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 (확대) 기존+중간육성 개체

▶ 최근 질병저항성이 강하고, 생존율 향상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양식어가에서는 어린개체(알·치어)보다는 중간육성*한 종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종자를 죽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가꾸어 키우는 것으로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과정을 이어가는 행위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정란만 생산하는 업체 → 입식하여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 → 중간육성하는 업체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추진배경

어린개체(알·치어)부터 중간육성개체 종자까지 폭넓은 육성·지원
* 종자중간육성단지 시범조성 2025년 예산 확보(30억, 2개소)

주요내용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산업을 촉진하고,
중간육성 종자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현행) 정액, 알, 치어, 치째, 어린 개체 → (확대) 기존+중간육성 개체

시행일

2025년 하반기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03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할 계획입니다.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속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농·수산물

-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70~8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소통을 위해 외국어 지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절임배추, 마른김 등 품목별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총 5개 언어(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덜란드어)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위생가이드라인 활용,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외국어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주요내용

단순처리 생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증가함에 따라 다국어·품목별 위생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및 교육·홍보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이후 순차적 제작·배포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61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개별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기존에는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하는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정된 공공기관

- 이로 인해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개별 인정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별 인정 신청이 중요

법령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 또는 성분 등에 관한 권리확보 및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 5. 30.)**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시행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 판매 시장 진입 제한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청 대상자 확대 필요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포함

시행일

2025년 8월 29일(예정)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앞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2025년 6월 4일부터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산림보호법](#)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추진배경

나무병원 명칭 및 유사한 명칭을 금지하여,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설)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별칭)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예외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완제품에 천연농약성분(IAA)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비료의 종류별로 주성분의 최소함량, 유해성분의 최대함량 및 품질과 관련된 그 밖의 규격 등을 정한 비료의 품질관리기준으로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음(비료관리법 제4조)
- ▶ 원칙적으로 비료에는 농약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조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한하여 천연농약성분(IAA)이 0.12m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 ▶ 제4종복합비료와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의 품질검사시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천연농약성분(IAA)의 검출 문제에 대한 비료 생산업자의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는 2025년 7월 중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 법령>「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 (2025. 7. 예정)

해조추출물을 사용한 비료의 ‘천연농약성분(IAA)’의 최대 검출 규정 마련

추진배경

비료 품질검사에 부적합 발생되는 천연농약성분(IAA)에 대한 검토

주요내용

IAA성분 검출 허용 규정 등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시행

시행일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발령일(2025년 7월 예정)부터 30일 이후 시행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농촌진흥청 교육훈련기획과

☎ 063-238-185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이 온라인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에는 그간 사용자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정부간편인증(Any-ID),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 또한 중앙, 지방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학습이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나만의 맞춤형 학습분석 자료도 제공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사용자 안정화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서비스 됩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s://hrd.rda.go.kr>)

농업기술교육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추진배경

농업기술분야 비대면 교육요구 확대에 따른 디지털 학습체계 전환을 위한 학습자 맞춤형 농업기술교육 종합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농업인 학습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2009년 개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재개발
- 학습자 정보통합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료한 학습이력 정보, 온라인 과정추천, 나만의 학습정보 등 제공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

☎ 063-238-2518

그간 110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기상재해 피해 대응을 위해 전국의 모든 농업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 농업인은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와 재해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예측정보를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민간협력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배경

기상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예측·예방 기반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추진

주요내용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통해 전국의 모든 농업인들이 본인 농장의 기상정보 및 재해예측정보를 미리 확인 가능
-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회원가입하고 신청 필요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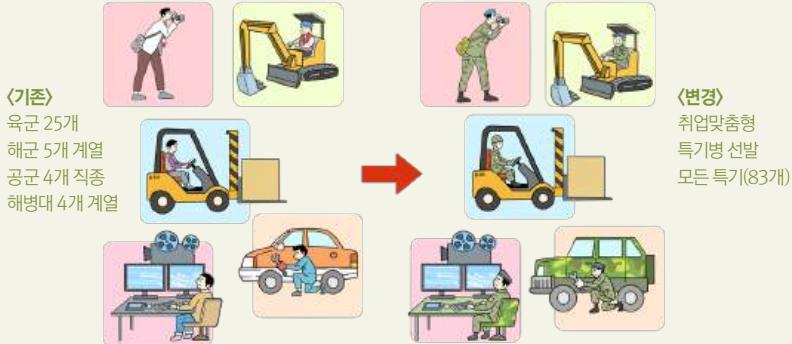
01. 병무청 —

자세한 내용은 p.153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일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됩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병무청 현역기획과

☎ 042-481-2722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됩니다.

- ▶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 ▶ 2025년 7월 접수부터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됩니다.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이를 통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추진배경

직업계고 지원 가능 특기 제한에 따라 일부 전공(학과)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등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모집 특기 확대 필요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준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은 추가 기술훈련 이수 필요

시행일

2025년 7월 접수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7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

- ▶ 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지역)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지역)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확대하여 모든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확대 시행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舊 1군)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舊 1, 3군)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추진배경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 입영자에 대해 전면 시행함에 따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주요내용

-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현 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전면 시행)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병무청 병역조사과

☎ 042-481-2891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 그동안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었으나,
- ▶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병역법」개정, 2025. 9. 19. 시행)

-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 (개선)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
- (추적 대상)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20

각 군 모집병 평가항목(가산점 등)이 전면 개선됩니다.

- ▶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자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 ▶ 2025년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가산점은 배점을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이고 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하는 등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이 향상되고, 모집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집병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추진배경

각 군 모집병의 가산점, 배점 등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평가항목	내용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 현혈·봉사(8 → 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동점자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 생년월일 빠른순 → (예선) 무작위 전산순

시행일

2025년 10회차(2026년 1월 입영) 접수부터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2025년 7월 1일부터 현역병(징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됩니다.

- ▶ 그동안은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결정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전방부대 고정으로 인한 입영자의 불편 해소 및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변화로 부대고정 필요성 감소에 따라 부대고정제도를 폐지하고, 입영부대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추진배경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를 통한 병역의무자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기준	변경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로 입영 결정된 사람,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결정 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68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전시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됩니다.

- ▶ 전시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병역자원 소집·관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그동안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 또한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반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배경

전시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교육임에도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시행일

2025년 7월 8일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978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됩니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

**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휴가(공가) 가능

- ▶ 그동안은 청원휴가의 범위(연간 60일 이내)를 초과하는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복무제도가 없어 대체복무요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 ▶ 이에 오는 9월 19일부터는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복무중단이 가능하며,
-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원활한 임무수행 지원을 통한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도입

추진배경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 체계 마련

주요내용

- 「대체역법」제22조의2(신설)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02-2079-6449

국방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혁신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술혁신 자금지원, 산학협력 지원, 국제규격 획득 지원 등
- ▶ 또한, 우수 역량을 보유한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배경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강화

주요내용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신규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연구기관을 지정 및 지원

시행일

2025년 7월 8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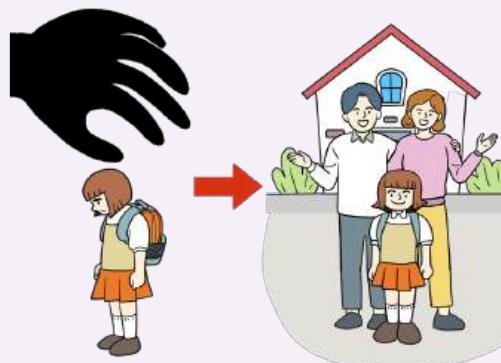
0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시행일 : 2025년 6월 21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개정)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 연고자에게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병과 가능
 -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 부여
 - 검사에게 학대아동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등 부여



02.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73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하여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역 건설업체 적정대가 보장〉**

- 낙찰하한율 2% 상향
- 공사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 기술제안입찰 텔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4~0.6%p 상향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지역 중소 업체 지원〉

-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신설(1점)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만점 기준 상향(20→30%)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시행일 : 2025년 7월

-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행일 : 2025년 7월 26일

-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의 안전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개정) 개정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법에 신설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조문은 공포일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

- ▶ 학대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면밀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추진배경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주요내용

학대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및 약식명령과 이수명령 병과 근거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한 검사의 청구권 확대 등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정부 통일 기반 마련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02-2110-4472

여권상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 그간,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기관별로 표기방식이 달라 정확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①여권상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와 ②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한국 1952년 가입)
 - 이러한 정보를 법무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관 간 외국인 신원 불일치가 해소되어, 외국인 관련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혜택 제공 시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정부 통일 기반 마련

추진배경

외국인의 인적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행정처리에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등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562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 ▶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추진배경

피해자의 알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추진

주요내용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
-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유 통지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044-205-3784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이 2%p씩 상향됩니다.
 - 10억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 10~50억은 88.745%, 50~100억은 87.495%, 100~300억은 81.995%로 각각 2%p 상향됩니다.
- ▶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율이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p 상향됩니다.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 (신설)	기타	50억 미만	50~ 300억	300억 이상	6개월 미만	6~ 12개월	12개월 이상
현행	14.5	15.0	15.5		15.0	14.0	15.0	16.0	13.0	15.0	17.0
개선	16.0	19.0	19.0	18.0	16.0	16.0	17.0	18.0	15.0	16.0	18.0

- ▶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상향됩니다.
 - 공사예산의 비율로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일반입찰은 종전 1%에서 1.4%, 지역의무공동도급은 1.5%에서 2.1%로 상향됩니다.
-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200억 이상 고난도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와 위험수반 공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도 시행됩니다.

-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1점)하고, 해당 지역 및 인근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됩니다.
- ▶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이었으나, 만점 기준이 30%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알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추진배경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

주요내용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 2%p 상향
-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4~0.6% 상향
-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 10억 미만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신설 및 해당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
-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대한 만점 기준 상향
- 적격심사 시 공통수금체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전자적 방식 허용
-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2025. 9. 1. 시행)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 044-205-2751

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7월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Hello AI. I am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민관이 함께 ‘나’를 증명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추진배경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주요내용

-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신원확인 수단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제공
- 민간의 삼성월렛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및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일

2025년 7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044-205-2825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기관별로 수행해왔던 장애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해 각 기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 ▶ 이때, 전체 행정·공공정보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지고, 소관 기관은 이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거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됩니다.
- ▶ 또한,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이 서비스 중단·재개 상황과 대체 창구·수단을 알 수 있도록 즉각 공지하고 장애원인조사를 통해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명>전자정부법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추진배경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체계 강화

주요내용

- (장애예방·대응)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 (등급 관리)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보시스템 관리
- (현황조사 및 점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 수행
-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자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장애상황 통보, 장애원인 조사·분석 수행

시행일

2025년 7월 8일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5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5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 044-205-5219, 5213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 기반의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 ▶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읍·면·동 내 마을 단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수행합니다.
- ▶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은 마을 내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위험지역 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추진배경

이상기후가 심화함에 따라 현장에서 선제적인 주민대피체계 작동 필요

주요내용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마을주민 기반의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 추진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

☎ 044-205-5252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부터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 ▶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및 장소,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 또한,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보도자료>보다 신속하고 충족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대응 강화

추진배경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 필요

주요내용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의무화, 긴급안전점검·안전조치 명령 권한 신설 등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대응 강화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14, 8915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추진배경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활성화 및 제출 편의 도모

주요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신설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란 신설
-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
- 성별 기입란 삭제

시행일

2025년 6월 1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됩니다.

- ▶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사업안전보건법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포함한다’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추진배경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예방

주요내용

-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설치·해체업 인력요건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포함, 유사자격인 판금·비계기능사는 ’25년 자격 취득자까지 인정
-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해야 함

시행일

-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2025년 1월 31일 이후
-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2025년 4월 29일 이후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 ▶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 ▶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022. 10. 18.)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현행법령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추진배경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외부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 2018. 10. 7.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에서 풍등에 의한 화재 발생

주요내용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 화염의 유입 방지를 위해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
-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

시행일

2025년 10월 18일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추진배경

동일 설비 증설이 찾은 반도체 공장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신규 설비 가동이 지연되어 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내용

- (전담직원)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 (우선심사)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시행일

2025년 5월 30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 5월 23일부터 개설 가능합니다.

- ▶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지원수당이 해당 청소년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추진배경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압류 차단

* 자립지원수당 :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 지급

※ 발급한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되며, 가정 밖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입금 받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로움

시행일

· 2025년 5월 23일

· 2025년 5월 23일부터 압류방지통장 시중 은행에서 신청 발급

* (참여기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참여예정)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02-2100-6392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되고,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 ** 필요시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조치
-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5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5년 4월 공포, 2025년 10월 시행)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배경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 참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6416

2025년 10월 23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정보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취업 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등

추진배경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처벌 범위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주요내용

- (그루밍 처벌 확대) 정보통신망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음 기관을 추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46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하여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안전투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 동 제도는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폭발·오염)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사업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5개社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70개社 적용(2025. 5. 기준)
- ▶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시의무자는 2026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해사안전기본법

해운분야 선박안전공시제도 시행

추진배경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공시대상)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 및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약분야 대상 우선 도입
- (기대효과)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선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을 통한 사고 저감

시행일

2025년 7월 26일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0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교량·터널 건설 등 해양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선박길이에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항로·정박지 지정, 통항 제한수역 설정, 교량·터널 등 건설 및 계류시설 건설 등

** 해양개발 사업에 따른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안전책을 마련하는 제도

- ▶ 그간,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이었으나,
- ▶ 여객선은 해양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을 할 경우 여객선의 길이에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개선합니다.
-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

추진배경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 시 선박길이에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해상교통안전 확보

주요내용

· 해양개발 행위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역을 현행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더해 「해운법」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까지 확대

시행일

2025년 5월 20일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20

해상교통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통해역안전특정해역*(부산, 여수) 내 통항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속력과 항법을 개선합니다.

- *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 ▶ 부산항 출입항로의 경우 저속운항 시 고속여객선의 조종성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 출입 여객선을 대상으로 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 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 (쾌속여객선) 입·출항 제한속력 18노트 / (카페리여객선) 입항 12노트, 출항 14노트
- ▶ 광양만 출입항로는 다른 선박, 암초, 항행장애물 또는 해저면과의 충돌이나 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흘수제약선만 항행할 수 있는 '깊은 수심 항로'를 항행할 수 있도록 항법을 개선합니다.
- ▶ 제한속력과 항법 개선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추진배경

해상교통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속력 및 항법 개선 필요

주요내용

- (부산항 출입항로) 고속여객선 운항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 출입 여객선 대상으로 특정해역 내 최고속력(10노트) 제한기준 완화
- (광양만 출입항로) 다른 선박, 암초, 항행장애물 또는 해저면과의 충돌이나 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흘수제약선만 항행할 수 있는 '깊은 수심 항로'를 항행할 수 있도록 항법 개선

시행일

2025년 5월 26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8

선박의 대형화,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도입 등 변화하는 선박운항 환경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업무에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상교통안전법」개정을 통해 정부(해사안전감독관) 및 민간기업·단체(안전진단대행업, 인증심사원)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검사, 해상교통관리, 관공선 운항 등 선박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업·단체)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추진배경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활용성 확대

주요내용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전문인력(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추가

시행일

-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요건 추가) 2025년 5월 20일
- (안전진단대행업자 자격요건 추가) 2025년 5월 26일

바다내비 앱 기능향상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44-200-6141

해양안전 앱인 ‘바다내비’*는 2025년 하반기(7. 1.)부터 이용자 중심의 개선된 기능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선박의 충돌·좌초 경보, 해상교통정보 등 서비스(8종)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 ▶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해도 표출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UI)과 조작방식(UX) 및 인증방법*의 개선과 함께
 -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인증 및 생체인증(지문)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로그인 기능 추가
- 그간 국립해양조사원 링크를 거쳐 확인할 수 있었던 기상정보(바다안개, 수온, 물때)를 바다내비 앱에서 직접 표출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 또한, 사용자(피구조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구조신호(SOS)발신 시 자신의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구조기관에 제공하여 피구조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추진배경

바다내비 앱 고도화 및 신속한 해양구조를 위한 앱 기능개선

주요내용

- (기능 고도화) 해도 표출 반응속도 향상, 사용자 중심 UI/UX 기능 개선
- (간편인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카카오, 네이버)와 지문을 통한 간편 로그인 기능 추가
- (해양기상 정보) 해양 기상정보(바다안개, 수온, 물때 등) 표출 기능 추가
- (전화번호 제공) SOS발신 시 자신의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구조기관에 제공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8

2025년 하반기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됩니다.

- ▶ 증명서 발급 대상 시험은 2025년 이후 시행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며,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에 대하여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백분위도 표기됩니다.
- ▶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나 200원의 수수료(수입인지)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현행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제52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추진배경

매년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진학·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수험생 편의 증진 도모

주요내용

- (발급대상) 2025년 이후 5·7급 공채 1차 시험
- (발급내용) 원점수, 백분위
- (신청방법)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200원의 수수료(수입인지) 부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적재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0632

2025년 7월 8일부터 화물차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서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6만원)가 부과됩니다.

* 화물차량이 톨게이트(하위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적재중량 측정 장비 등을 통해 측정한 자료

- ▶ 그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화물차가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입증된 경우에만 과태료(6만원)를 부과할 수 있었고,
 -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는 법령상 입증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 ▶ 이에,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8일부터 사진, 영상기록매체뿐만 아니라,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센터 누리집>도로교통법>법률 제20647호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추진배경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

주요내용

- 화물차 적재량 초과 시 기존에는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으로 톨게이트 등에서 현장 단속하여 범칙금(5만원, 별점 15점)을 부과하였으나,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7.8부터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160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의2)

시행일

2025년 7월 8일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3150-03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4. 29.)으로 경찰 손실보상* 절차가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민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경직법 제11조의2)

- ▶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느라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30일부터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명백 사건은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지급 기간(30일) 등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였고,
 - 그 외에도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문자, 이메일 등)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경찰청 누리집>보도자료>“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추진배경

(간이 심의 절차 마련)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위원 3인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간이 심의 절차 마련(제11조 제2항)

주요내용

- (민원 처리 기간 명시) 보상 결정 기간(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보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등 처리 기간 명시(제10조 제4항·제5항 등)
- (제출서류 간소화·통지 수단 다양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청구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 보장(제10조 제3항·제8항 등)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032-835-2685

그동안 해양사고 위험이 높았던 상왕등도 - 위도, 추자도 서측, 제주도 남부 연안 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확대하여 선박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 확대되는 해역은 서울 면적의 약 6배로 관제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박 통항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2025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운항 선박과의 통신 상태 및 관제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고시\)](#)

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추진목적

광역VTS 해역 통항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추진

주요내용

(관제구역 확대) 그동안 해양사고 위험이 높았던 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확대하여 선박안전관리 강화

* (확대 해역) 군산광역 상왕등도-위도 해역, 목포광역 추자도 서측 해역, 제주광역 제주 남부 연안해역

시행일

- (시범운영)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 (정식운영) 2025년 6월 21일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032-835-2986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관제대상 선박의 신고시점이 기존의 진출입에서 항행, 정박, 계류 시로
6월 21일부터 명확해집니다.

- ▶ 이번 개정으로 항행신고는 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위치보고선 통과할 때, 정박지 또는 계류지에서 출항하려거나 출항할 때 하여야 하고,
- ▶ 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에는 정박신고, 계류시설에 선박을 불들어 매어놓을 때에는 계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선박의 운항자가 신고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소관법령>“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양경찰청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고시)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 명확화

추진배경

선박운항자의 신고시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선박 통항안전을 위해 선박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필요

주요내용

선박이 항행하는 경우(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위치보고선을 통과할 때, 출항하려거나 출항할 때)와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경우 선박명, 위치, 시간 등을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032-835-2349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연기 신고에 인터넷·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신고방법이 도입됩니다.

- ▶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작동하며 장치 고장 등 사유 발생 시 파출소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거리 방문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고장 신고로 불법 조업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추진배경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등에 방문해야 하는 어민 불편함 해소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방법에 인터넷·모바일 통한 전자적 신고방법 추가 시행

시행일

2025년 9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51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됩니다.

- ▶ 그간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주취·약물복용 조종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이 이번 개정으로 카누·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음주 등 부주의한 상태에서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전복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시행일
①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100만원	2025. 6. 21.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 홍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2025. 12. 20.까지/6개월간)함으로써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약물복용 조종금지 신설

추진배경

해상교통안전법 및 유도선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규정 신설

주요내용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시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2-6399-7155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에서도 2025년 5월 7일부터
재외동포들을 위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 협업)

-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접속 후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 기존 전국 34개 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센터 포함) 및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서비스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누리집>알림·소식>보도자료>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서비스

추진배경

국내 방문 재외동포 지원(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

주요내용

- 대상: 국내 방문하는 외국국적동포(F-4비자 소유자) 및 재외국민
- 범위: 1종-재발급, 2종-재발급·갱신,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
- 장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원트리타워 A동 2층
- 방법: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접속 → '광화문센터 방문예약'

시행일

2025년 5월 7일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 02-2110-1572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생성형 AI의 위험성·역기능을 제보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개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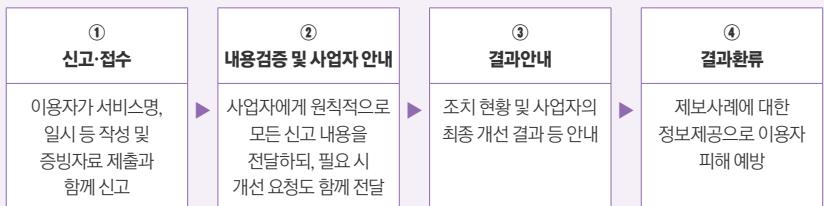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usermain.do)」내 메뉴로 구성될 예정

- ▶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폭력·성범죄·명예훼손·오정보 등 위험성을 제보하면 내용 확인 후 사업자·이용자에게 공유하며,
- ▶ AI 서비스별 특성, AI 관련 피해유형 및 예방 방법,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험성 제보 내용 등 AI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용자가 알기 쉽게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은 2025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개설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제보 프로세스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533
☎ 044-202-6657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됩니다.

-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폐지됩니다.
※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
- ▶ 정부는 법 폐지 후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유통점의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지원금을 비교하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추진배경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주요내용

- (사업자 경쟁 활성화)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지원금 15% 이내),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폐지 등
*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적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은 유지
- (이용자 권리 보호)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제공 이관 등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

**보고규정 개정으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비정상적 피폭 관련 초동 대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기 모니터링을 제고함으로써 적합한 장해방지 조치를 통해 종사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 그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 피폭으로 선량한도 초과가 확인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었으나,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에 후송할 때와
- ▶ 선량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은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때에도 규제기관에 보고토록 보고규정이 개정됩니다.

〈참고 : 원자력관계사업자 보고의무〉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량한도 초과가 확인될 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때• 선량한도 초과가 확인되거나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 발생 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적기 종사자 보호에 한계

주요내용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 발생 시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에 후송하거나, 선량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은 급성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될
경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개정

시행일

2025년 5월 16일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02-397-7264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허가서류를 정비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통상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

- ▶ 그동안 핵연료주기시설은 그 종류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업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또한, 그동안 시설의 종류별로 상이하던 허가(또는 지정) 신청서류를 통일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알림마당>보도자료>“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2024.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원자력안전법(2025. 10. 23. 시행)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개편

추진배경

원자력안전법령의 목적과 안전규제 취지에 맞게 대형 발전용원자로시설 등과 같이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

주요내용

- 핵연료주기에 대한 사업의 허가·지정을 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로 개편
- 시설별로 상이하던 허가(지정) 신청 서류를 통일하고, 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18

그간 해외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오던 국내대리인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이 있거나, 임원구성과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 ▶ 본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내대리인에 대한 업무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 또한, 집행력 확보를 위해 국내법인 미지정, 관리·감독 불이행, 국내대리인 상황 처리방침 미포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대리인의 지정형태, 운영방식, 업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내대리인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배경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운영

주요내용

- 국내법인이 있거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의 업무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대리인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로 명확히 함
-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 경우 이외,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과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환급금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과세 ·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재·지변, ② 해외이주, ③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④ 중기중앙회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약환급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25.7.1.)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이익 포함 	소득세법 (25.7.1)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 4233)

기획재정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용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❶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❷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❸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❹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25.7.1.)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중개회사가 시장 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등을 수행하는 위탁거래 본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 보도·설명>“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5.2.7.)

관세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	<p>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p> <p>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p> <p>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4. 제9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p>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p> <p>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p> <p>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p>	<p>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p> <p>제16조(품목분류의 고시)</p> <p>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비공개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p>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p> <p>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p> <p>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비공개 요청서</p>	<p>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5.6.1.)</p> <p>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2)</p>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기업·평가위원 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등에 대한 통제방안 부족 · 평가위원의 비 전문적인 평가에 대한 조달기업의 반발·민원 다수 제기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소액(추정가격 1억)사업 일부에만 시범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前)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한 부적절한 사전접촉 행위 신고 가능 · (평가 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유도 · (평가 後)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위원·기업 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 상시 분석 및 조치 ● 자체조달 대상인 소액 사업 전체로 대폭 확대 	<p>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23.6.27. 평가팀 신설)</p> <p>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 (042-724-6124)</p>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 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MAS)으로 계약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25.3.17) 	<p>「철근 다수공급자 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에 따른 공고 ('25.5.15.)</p> <p>조달청 건설환경부과 (042-724-7068)</p>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스트레스 금리) 0.75% ●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형] ST금리 100% 적용 [고정형] ST금리 0~60% 적용 [주기형] ST금리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DSR을 적용받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일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로 2단계를 적용 ● (스트레스(ST) 금리 적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 [변동형] ST금리 100% 적용 [고정형] ST금리 0~80% 적용 [주기형] ST금리 0~40% 적용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25.7.1.)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5천만원→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 까지 보호 <small>☞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small>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5.9.1.)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p>①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경우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를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p> <p>②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요사항보고서는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공시 가능) 주요사항보고서 공시</p> <p>③ 공시위반 과징금 · 5%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상장법인 과징금 부과한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20억원</p>	<p>①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경우직전년도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함께 공시</p> <p>②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p> <p>③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 · 5%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시가총액의 만분의 1(10배 상향) · 상장법인 과징금 부과한도: 최소 10억원~20억원(부과한도 강화)</p> <p>☞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 7.22.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p>	자본시장법 (25.7.2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9년간의 자유선임기간 보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5.5.20. 공포 시)

금융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합 시행	● 전기요금 연체시 연체료부과 및 한전으로부터 단전 또는 전류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된 전기요금과 금융채무를 통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시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번호 제 20823호)</p>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5.9.19.)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구제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최고금리(20%) 수준의 이자는 인정되는 등 범죄이득 박탈에 한계가 있고, 재벌행 등기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도록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수취이자 20% → 0%) 하여 범죄이득 박탈 및 피해구제 강화 	대부업법 ('25.7.2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금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아 범죄 억단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대부업을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범죄 형량을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금융관련 영업행위 규율위반 최고수준(징역 5년) 수준으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대부업: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벌금 2억원 <p>☞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2.27일)</p>	금융위원회 기계금융과 (02-2100-2514)

02. 교육·보육·가족

교육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전액 - (1~3구간) 570만원 - (4~6구간) 420만원 - (7~8구간) 350만원 - (9구간) 100만원 · 다자녀 첫째·둘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전액 - (1~3구간) 570만원 - (4~6구간) 480만원 - (7~8구간) 450만원 - (9구간) 135만원 · 다자녀 셋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8구간) 전액 - (9구간)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전액(동일) - (1~3구간) 600만원(+30만원) - (4~6구간) 440만원(+20만원) - (7~8구간) 360만원(+10만원) - (9구간) 100만원(동일) · 다자녀 첫째·둘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전액(동일) - (1~3구간) 610만원(+40만원) - (4~6구간) 505만원(+25만원) - (7~8구간) 465만원(+15만원) - (9구간) 135만원(동일) · 다자녀 셋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8구간) 전액(동일) - (9구간) 200만원(동일) <p>※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이므로 25·2학기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 적용</p>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2)

여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7.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해양('23.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해양과 수산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해양교과서 · (보급)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과 생활('25.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기후·생태·환경 교육콘텐츠 확충 및 진로 보조교재 도입 · (보급) 일반계 고등학교로 보급 확대 및 진로교육원과 연계한 해양진로교육 확대 	개정교과서 보급 ('25.10.)

03.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보호주체 ·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을 입양기관이 보호함	● 보호주체 ·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전까지 아동을 보호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
	● 예비양부모 조사 및 결연 · 입양기관이 적합한 예비 양부모와 결연함	● 예비양부모 조사 및 결연 · 복지부(위탁가능)가 예비양부모를 조사하고,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함 * 위원장: 복지부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 입양 절차 · 법원하가를 거쳐 입양을 완료함	● 입양 절차 · 법원이 임시양육결정(신설) 및 입양허가를 함	· 국제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25.7.19.)
	● 사후관리 · 입양기관이 입양가정을 사후관리함	● 사후관리 · 복지부(위탁가능)가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상황을 점검함	
	● 국제입양 절차 ·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입양 시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별도 절차 없음)	● 국제입양 절차 ·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입양 시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 위탁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상대국(아동 본국)과 입양절차 진행 협의(아동 입양적격성 확인 등)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 → 입양허가 후 복지부(위탁 가능)의 입양가정 적응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7 / 3412)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신설)	●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25년 10월~) ·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민간시장취창업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5.10월 중) 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3 / 3081)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정 근로기준법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제한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5.10.23.)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 수령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령 (25.7.1.)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제한 ● (유형2) 5인 이상 빙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빙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2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에 포함 ● (유형2) 5인 이상 빙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빙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5.5.1.)
분쇄기·혼합기 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쇄기 등 가동 중 덮개·울 등 개방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울 등 개방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덮개 등을 열기 전 분쇄기등 가동 정지 · 분쇄기등과 덮개 등 간에 연동장치 설치 · 분쇄기등에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6.29.)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의 근로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기준과 (044-202-8857)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p> <p>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820)</p>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등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 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p> <p>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820)</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담배유해성 관리법」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p style="margin-left: 20px;">☞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누리집(보도자료)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p>	담배유해성관리법 ("25.11.1")
디지털 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및 규제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규제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 방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규제지원센터 운영 ("25.4.29")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등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첨부자료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장 지정 임상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자료 · 외국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임상시험자료 ·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 게재 자료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등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 공고 및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는 임상평가에 관한 자료로 허가·인증 신청 · 허가·인증 신청 시 비교란에 "임상평가 의료기기"로 표기 ● 첨부자료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임상평가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25.9.1.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4-719-3756)

03. 보건·복지·고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신청 시 품질책임자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책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신청 시 품질책임자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책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전에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인된 경우 그 제출을 면제 · (좌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5.7.2.)

통계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20.7. 시행'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25.7. 시행'26.1. ☞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고시일 동일)

0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가)</td><td>30%</td></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p>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td>30%</td></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p>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조세특례 제한법 126의2 ("25.7.1.)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가)	30%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4만원 (7.7% 증)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2대 9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1월 30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3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p>문화예술 진흥법 ("25.2.3.)</p>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p>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기준) 독립한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기준) 사무소 	<p>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25.8.1.)</p> <p>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p>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포츠 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 부재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25.8.1.)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단순 징계 요구만 가능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	
	●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에 대한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절차 명문화 부재	●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에 대한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절차 명문화 · 미이행시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 가능	
	●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제부를 통해서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	● 문제부를 거치지 않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 요구 가능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보도자료>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044-203-3193)

05. 환경·기상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 위험지역 안전운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 댐 방류 지점(37곳)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위험지역 안전운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 위험지역 안전운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 댐 방류 지점(37곳) 위에 추가하여 홍수정보 심각단계 발령 지점(933곳)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위험지역 안전운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 알림·홍보>보도·설명>“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한다” 	<p>(‘25.6.30)</p> <p>환경부 물자해대응과 (044-201-7662),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31)</p>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허가, 영업신고로 취급자 차등화 	<p>화학물질관리법 (‘25.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검사 실시(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 차등화(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 보도자료>“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p>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0)</p>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 연간 1만톤 이상 폐트를 생산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 연간 5천톤 이상 폐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 환경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25.9.26.)</p>
			<p>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p>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14.〈신설〉	<p>1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 (참고)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p>	
	<p>〈별표 1의2〉 1. 비고 4.〈신설〉</p> <p>〈별표 1의4〉 비고 9.〈신설〉</p>	<p>〈별표 1의2〉 1. 비고 4.〈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p> <p>〈별표 1의4〉 비고 9.〈신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대행업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p> <p>☞ (참고) 환경부 누리집)일림·홍보)보도·설명)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p>	<p>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2 별표1의4 (25.5.27.)</p> <p>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p>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개선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6.〈신설〉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25.5.23.)
	① 7.〈신설〉	①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연구·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참고) 환경부 누리집>알림·홍보> 보도·설명>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심층평가 검토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25.10.23.)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환경적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신속평가 검토기준을 충족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5.6.12.~7.2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
야생동물 영업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 관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5.4.28~6.9)" 	『야생생물법』 ('25.12.14)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목록(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야생동물)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폐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5.4.28~6.9)" 	『야생생물법』 ('25.12.14)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05. 환경·기상

환경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신고 시 후속절차 부재 ● 등록물질의 유해성 심사 결과 위주의 정보 공개 ● 유독물질로 일률지정하여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수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화학물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 기업이 등록·신고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제3자의 수정·보완 절차 신설 ●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예방관리 책무 신설 ● 물질의 유해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 <p>☞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 “회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통과”</p>	화학물질등록평가법 (25.8.7)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83)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갯벌생태 해설사 양성기관 추가지정	● 1개소(서울에너지 드림센터)	● 2개소 이상 추가지정 예정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 단일과정 운영(80시간)	● 기본(80시간) 및 간이(30시간) 과정 구분운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27)

기상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시범 서비스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를 시범 제공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5.11.23.)
			기상청 해양기상기후과 (042-481-7406)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면바다 전해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서해 면바다 대상 시범제공('24.12.~'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면바다 전해역 확대('25.10.~)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풍랑주의보 통보문에 포함하여 제공 	('25.10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추가하여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발송('25.11.~) · 특정 수준 대설 발생 시, 특보구역 단위로 대설 안전안내문자 발송 	('25.11월)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농업, 방재, 산림 등 4개 분야의 영향정보 18종 ※ 낭·난방도일, 체감온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구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정보 ● 에너지, 생태, 수자원 등 7개 분야의 영향정보 26종 ※ 태양광 발전량, 유역별 극한 강수량, 농산물 재배적지, 80m 풍속 등 ● 극한기후지수 27종(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25.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기후지수 27종(연)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042-481-9601)
기상기후 데이터 API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산업 분야 맞춤 데이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맞춤 묶음 서비스) 사회·산업 분야 활용 수요에 맞춰 분야 특화 지점별 데이터 묶음 서비스 확대 (농업,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산업 분야 맞춤 데이터 서비스 확대 · (수요 맞춤 묶음 서비스) 사회·산업 분야 활용 수요에 맞춰 분야 특화 지점별 데이터 묶음 서비스 확대 (농업, 교통) 	('25.10.3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42-481-7475)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대형가속기별 토지 활용 가능 기간에 차이 존재	● 대형가속기별 토지 활용 가능 기간을 일원화 ·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간신 가능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9.19. 시행)
	● 대형가속기 분야 진흥에 대한 국가·지자체 역할 불명확	●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지자체 역할 명시 ☞ (참고) 과기정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 인프라혁신과 (044-202-4661)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신규〉	● 무탄소전원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등을 위해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5.9.2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신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등 지원방안 신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수립 등 규정 ☞ (참고) 산업부 누리집)보도자료) 고준위 특별법국무회의의 의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9.26.)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3)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술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술 판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발적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기업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허지 ·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판정을 받은 기업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 	법 제9조의2 제9조의3 (25.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술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기술 수출 면제 또는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해 수출의 승인 및 신고 절차의 일부를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 	법 제11조 제11항 및 제12항 (25.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자·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자·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11조의3 (25.7.22.)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구축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MST 사업화 시스템 통합 ● 통합 DB 설계 및 통계 서비스 개발 	(‘25.12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과 (044-200-6221)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제재처분 유예기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재제처분 유예 기간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시 재제처분 유예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에 따라 소기업은 60일, 소상공인은 90일로 연장기간 차등 · 이외 대상은 기존 30일 유지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25.10월)
			해양수산부 행정정보정책과 (044-200-5871)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등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구간 400억원~1,500억원(5개 구간) ●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구간 10억원~120억원(5개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등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구간 400억원~1,800억원(7개 구간)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규모기준 상향 ●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규모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구간 15억원~140억원(9개 구간)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규모기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5. 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576, 7454)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세정보 AI 챗봇 상담 및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관세부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 및 경영 애로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 상담 창구 확대를 위해 AI 챗봇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美 상호관세 발표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25.5.14)" 	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5. 6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1, 7502)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 (KS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美해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해외거점 기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리스크 대응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체계 고도화, K-스타트업센터(KSC) 기능 강화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자료] 美 상호관세 발표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25.5.14)" 	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5. 6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1, 7502)

조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제조기업수 1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 과정에서 협업 제조기업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제조기업 변경 행정절차 후 납품 가능 · 변경절차 행정절차로 인해 납품지연 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제조기업수 최대 3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 운영 가능한 제조기업 수가 최대 3개사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조기업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지정 시 등록한 협업 제조기업 중 한곳으로 변경하여 납품 가능 · 납품여건에 따라 제조기업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계약이행 가능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25.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추가는 혁신제품 지정 당시와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혁신제품을 다른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 신규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제품에 한하여 혁신제품 지정 당시와 다른 세부품명이어도 규격추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추가를 통해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구매 참여 제외 기준을 획일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계약 체결 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 · 시범구매는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1회로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구매 참여 제외기준을 유형과 대상을 세분화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계약 체결 제품은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에 한하여 참여 허용 · 5천만원 이하 시범구매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 허용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042-724-6316)
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 10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 20억원 미만 	<p>「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25.6.16.)</p> <p>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302)</p>

통계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프랜차이즈 통계」 가공통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행정자료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국세청 사업실적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통계 작성 (조사자료 일부 활용) <small>☞ (참고) 통계청 누리집>통계조사>통계청 통계>분야별 보기>도소매·서비스>프랜차이즈조사</small> 	<p>프랜차이즈통계 공표 ('25.12월 중)</p> <p>통계청 산업통계과 (042-481- 2187)</p>

특허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상표법·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p>상표법 ('25.7.22.)</p> <p>디자인보호법 ('25.7.22.)</p> <p>특허청 산업체산 보호정책과 (042-481- 8227)</p>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기간 2개월(법 제57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후 서류열람기간 30일(법 제57조제3항) 	상표법 ('25.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법 제6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30일(법 제60조제1항)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 5981)

특허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허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의 실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의 실시에 수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법 (25.7.22.)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공급 행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특허출원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벌칙규정은 없었음 <p style="margin-top: 10px;">☞ (첨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 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은 라목으로 변경 ·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추가 	특허청 특허제도과 (042-481-5736)

특허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자인 무단 등록 대응을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선출원 심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선출원심사: 명백한 거절 이유라면 거절 가능 	디자인보호법 (‘25.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심사디자인권의 이의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심사디자인권의 이의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권리자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 후 ‘정당권리자출원’으로 출원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청구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권리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 후 ‘정당권리자출원’을 통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청구 	특허청 디자인심사과 (042-481-5766)
특허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	<p>〈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는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개월 이내 	<p>〈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는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4개월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25.7월) 특허청 특허제도과 (042-481-8153)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제3조 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①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 「하도급법 시행령」 및 「부당특약고시」상 부당특약 중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3.16.)</p>	<p>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10.2.)</p>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p>

0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동발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하단이 막혀있어 휠체어 접근 제한 - 모니터(15인치) 및 UI 위치가 높아 조작이 어려움 · 저시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 밝기와 색채 대비가 어두워 인식이 어려움 - 고대비, 돋보기(확대) 기능 등이 없어 이용 불편 · 전맹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음성안내가 없어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 점자로 기능 위치를 찾아 교통카드를 올려놓아도 충전금액 선택 불가로 사용 어려움 - 신분증을 올려놓아도 현재 진행 단계를 알 수 있고, 동전 투입구 등 찾기가 매우 어려움 ·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글씨와 어두운 화면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조작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자동발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비 하단 설계 - 낮은 화면 기능 제공으로 · 편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환급 기능 통합으로 보증금 환급기를 찾지 않아도됨 · 저시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가 밝고 글씨가 커서 정보 파악이 용이함 - 고대비, 돋보기(확대) 기능 지원으로 이용편의 증진 · 전맹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전용키패드를 통한 음성안내가 있어 사용 편리 - 음성안내를 통한 발권 진행 시 현재 단계, 모듈별위치, 결과 등 알 수 있어 사용이 편리 ·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글씨와 밝은 화면으로 이용이 편하고 조작이 쉬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3)

국토교통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민간임대주택만 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 가능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보도자료) "비(非)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 6월4일 시행"</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5.6.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 (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용도분류가 없어 건축법 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도심·주거지 인근에 입지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천m²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하여 도심 인근에서 운영 가능도록 개선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 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개정안</p>	건축법 시행령 (25.4Q 공포 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도시개발 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적좌표 측량의 정의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로중심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지적좌표 측량 시기 및 방법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 <p>☞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확정측량 행정예고</p>	「지적확정측량규정」 (25.7.1. 예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는 전매 가능 · 계약시점 2년 초과 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최초로 택지 공급받은 자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5.6.25)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총장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투입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편성, 예비 2편성 ● 최대운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 ● 배차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투입 편성('25.下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편성, 예비 3편성 ● 최대운집도('25.下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 이하 ● 배차 간격('25.下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 30초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947)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이동시간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원주군 상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62.8km - 이동시간: 76분 · 포항~영덕 (경북 포항시 흥해읍 ~ 영덕군 강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37.0km - 이동시간: 42분 · 부산신항~김해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 김해시 활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16km - 이동시간: 18분 · 계양~강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 강화군 선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39km - 이동시간: 4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원주군 상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55.1km (7.7km 단축) - 이동시간: 33분(43분 단축) · 포항~영덕 (경북 포항시 흥해읍 ~ 영덕군 강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31.0km(6.0km 단축) - 이동시간: 19분(23분 단축) · 부산신항~김해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 김해시 활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12.8km(3.2km 단축) - 이동시간: 8분(10분 단축) · 계양~강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 강화군 선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거리: 29.9km(9.1km 단축) - 이동시간: 18분(25분 단축) 	해당없음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89)

국토교통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 보성선) 개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임성리 지역의 철도(82.5km) 개통('25.9.30)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52)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에 AI CCTV 1,552대 설치(~'2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수인분당선 등에 AI CCTV 400대 추가 설치(~'25.12)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정책과 (044-201-4617)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환경에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동차등록업무 처리 · 공동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접근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분실 시 종이형식 등록증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환경의 모바일 민원처리 · 공동인증서 이외에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접근방식 개선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지갑으로 재발급 가능 	('25.6.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항선박 대상 전문평가 제도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개별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전문 인정성평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주도로 체계적 추진 및 평가비용 국비 지원 	자율운항 선박법 (`25.1.3.)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 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증서 반납 시 계선신고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기관에서 소관 지방청에 전월 계선신청 선박 목록취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증서 반납 시 소관지방청 확인 및 안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기관에서 신청받은 정보를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소관 지방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리 	선박입출항법 선박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계선가능 시설정보 확인(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지방청에 별도 전화 등으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계선가능 시설정보 실시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지방청에서 등록한 계선가능시설정보를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선주에게 안내 ☞ (참고) 보도자료 향후 배포예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44-200-5775)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 187만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면적) 99만m² · (분양면적) 19만m² · (공공시설) 69만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 254만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면적) 99만m² · (분양면적) 38만m² · (공공시설) 117만m²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9)
항만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표준시장 단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자료 수집 및 공사비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 도모 	항만 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 규정 (개정안 공포 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2)

08. 농림·수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내 근로자 숙소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 면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 관광농원(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의 시설면적 내 20%미만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 면적제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2.0㏊), 관광농원(3.0㏊) 	농지법 시행령 ('25.6.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 1739)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15개 지역·지구만 농지 전용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권한이 위임되는 15개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 	농지법 시행령 ('25.6.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 1739)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업법인 ·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농지법 시행령 ('25.6.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 1732)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25.12.21.)으로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푸드',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혁신클러스터' 정의 규정 마련 · (추진체계) 푸드테크 관련 정책·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 마련 · (지원정책) 사업자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규제개선 신청 절차 마련 등 규정 <p>☞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검색</p>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5.12.21.)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발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구제역 발생국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동물보건기구 평가 결과,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 	(‘25.5.29)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1인당 3마리까지 입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0마리까지 확대, 자격 요건 강화 	동물보호 센터운영지침 (‘25.7월 예정)
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시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내부 및 인터넷 누리집 	수의사법 시행규칙 (‘25.8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3)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25. 3.18.)을 통해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법정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법 ('25.9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2)
우편물·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식물방역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신고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없음 ●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신고 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신고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를 지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신고 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목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물방역법 (25.9.1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25.9.19)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 특구 지정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식품의 기능성원료 적용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 운영 ● 건강기능식품 제조분야 공유공장 적용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 및 실증특례 운영 	지역특구법 (25.5. 30.)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8)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044-201-2187)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바이오 기업 전문 보육시설인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p style="margin-left: 20px;">☞ (기업입주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p>	<p>'25.9월부터 모집</p>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4)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611, 5612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주방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95220 · (인원)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611, 5612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5년 이상 영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95220, 45311 · (인원)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p>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7차 외국인력정책 위원회 의결 ('24.5.15.)</p>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70)
친환경 농업작물금 단기인상으로 농가소득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논 단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 유기지속: 35) ② 유기지속 단가 (유기 단가의 50%) ③ 유기전환기 (무농약 단가) ● 지급 상한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당 0.1~5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논 단가 (유기: 95만원, 무농약: 75, 유기지속: 57) ② 유기지속 단가 (유기 단가의 60%) ③ 유기전환기 (유기지속 또는 유기 단가) ● 지급 상한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당 0.1~30ha 	<p>농업농촌공익직불법 ('25.상반기)</p>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4)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지 관리를 위해 '경운 1회' 의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 농업인 의무교육 2시간 이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폐지·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운 외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다른 휴경지 관리방법 허용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준수사항 제외 · 교육 대상자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고려하여 간편교육 등 허용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25.6.2. 시행)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축산물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품목) 소 · (발급언어) 영어, 중국어(보통어, 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축산물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품목)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 (발급언어) 11개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영어, 중국어(보통어, 광동어) - (소·돼지) 말레이어, 크메르어 - (돼지)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 (꿀) 일본어, 힌디어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25.5월 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 (신설)	● 별표 15의2 신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공포일로부터 3년 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 동물의료팀 (044-201-2656)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에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에 배우자 포함 *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 	동물보호법 시행령 (‘25.5.20.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 동물의료팀 (044-201-2660)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입주 대상업종에 수직농장 반영 	산업단지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25.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044-201-2187)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업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을 노지 내수면양식업까지 확대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보도자료)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잊지 말고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25.4.1.)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 내 안전장비 지원품목으로 '구명조끼' 지원 가능 · (자부담) 40% * 국3/지방3/자담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신규 내역사업으로 팽창식구명조끼 보급 · (자부담) 20% * 국4/지방4/자담2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지침 제정 ('25.6.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규정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 ('25.10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려는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7조 	해양심층수법 ('25.10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4)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수산물(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냉동찰조기, 냉동고등어, 마른멸치, 천일염 ● 신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전복 ● 냉동(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전복, 우렁이, 게, 새우, 장어, 꽁치, 연어, 민어, 홍어, 대구, 삼치, 노래미, 가지미, 가오리, 볶어, 갈치, 아귀, 고등어, 명태, 쭈꾸미, 낙지, 오징어 ● 건제품(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치, 김, 양미리, 다시마, 미역, 오징어, 명태, 한지채, 쥐치, 새우, 파래, 노가지, 대구, 과메기, 아귀, 조기, 청각, 밴댕어 ● 수산가공(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일염, 건가공(채)류, 건가공(포)류, 건가공(해조)류, 연제품류, 어분류, 어유류, 젓갈, 조미가공, 통조림, 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수산물(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냉동찰조기, 냉동고등어, 마른멸치, 천일염 ● 신선(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전복, 새우, 아귀, 삼치, 연어, 대구, 갈치, 고등어, 오징어, 조개, 고막, 바지락, 홍합, 굴,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다시마, 파래, 미역 ● 냉동(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전복, 우렁이, 게, 새우, 장어, 꽁치, 연어, 민어, 홍어, 대구, 삼치, 노래미, 가지미, 가오리, 볶어, 갈치, 아귀, 고등어, 명태, 쭈꾸미, 낙지, 오징어, 새우, 가재, 해파리, 청어, 적어, 불락, 양미리, 복어, 다랑어, 날치, 갑오징어, 화살오징어, 문어, 가리비, 고등, 조개, 바지락, 홍합 ● 건제품(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치, 김, 양미리, 다시마, 미역, 오징어, 명태, 한지채, 쥐치, 새우, 파래, 노가지, 대구, 과메기, 아귀, 조기, 청각, 밴댕어 ● 수산가공(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일염, 건가공(채)류, 건가공(포)류, 건가공(해조)류, 연제품류, 어분류, 어유류, 젓갈, 조미가공, 통조림, 죽 ● 활(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어, 미꾸라지, 새우, 게, 가재, 우렁쉥이, 해삼, 개불, 불락, 둔, 방어, 넙치, 농어, 정강이, 장어, 가지미, 송어, 청어, 민어, 바리, 연어, 쭈꾸미, 낙지, 문어, 오징어, 굴, 전복, 가리비, 조개, 고막, 홍합, 바지락, 고등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 샌드박스 지정(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23.10.4.)</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057)</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유어장) 허용	● 가두리·죽제식양식장의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유어장으로 허용	● 기존의 가두리등낚시터 외에 수상낚시터를 마을어장 내에서 유어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5.12월 중)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수산자원조성금 일부 폐지	● 어업 및 양식업의 면허·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수산자원조성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	● 어업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폐지(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등)	수산자원관리법 ('25.4.22.)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 제외	●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④ (생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①~④ (생략)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전자문서로 된 명부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5.6.2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신설)	●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 · (안전관리)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 마련 · (산업관리)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어선법 ('25.12.21.)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를 생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규제개선(자기 완결적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의 생산 및 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개선 	수산업법 (25.7.23.)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044-200-5605)
양서류 질병 3종,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전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 연어빈혈증, 자이로닥 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패류) 보나미아감염증 (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 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 리아레프리Jessica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 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 전복하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기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체장염, 급성간체장괴사병, 십각류무지기바이러스병 ·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전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 틸루스증(자이로닥 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패류) 보나미아감염증 (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 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 아레프리Jessica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 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 전복하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기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체장염, 급성간체장괴사병, 십각류무지기바이러스병 · (양서류) 양서류향아리곰팡이병, 도롱뇽향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25.7.5.) 해양수산부 여종양식정책과 (044-200-5625)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부산물 운반업자에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시설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 단순 운반업자 시설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7.2.)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수산종자 정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 정액, 알, 치어, 치째, 어린 개체 · (수산식물)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정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 정액, 알, 치어, 치째, 어린 개체 + 중간육성 개체 · (수산식물)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 중간육성 개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5.하반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8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품목별 다국어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품목별 다국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3)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가능자(2개 업종, 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업자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가능자(3개 업종, 8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업자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 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8.29.)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043-719-2461)

산림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나무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6항 ● 이를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 제54조(벌칙) 제5항 	 산림보호법 ('25.6.4.)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농촌진흥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료 제품속 천연생장조정 물질의 비의도적 허용 예외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의도적으로 훈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의도적으로 훈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조주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돌-3-아세트산[Indole-3-acetic acid; IAA]에 대하여 0.12mg/kg 이하로 허용한다.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 법령▶‘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25. 7월 예정)</p>	<p>『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25.7월 종)</p> <p>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p>
농업기술교육 시스템 새단장을 통한 농업인 학습 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사용자 불편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가입 절차 복잡 및 접속장애 수시 발생 농업교육이력 분산관리에 따른 불편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지방 교육이력 별도 관리에 따른 사용자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가입, 로그인 간소화 농업인 학습자 교육이력 통합 및 사용자 선호 반영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검색, 대시보드 등 농업인 학습자 이용 편의성 개선 <p>☞ (참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https://hrd.rda.go.kr)</p>	<p>서비스 개시 ('25.9.1.) (063-238-1851)</p>

농촌진흥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110개 시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 110개 시군: 경기9, 강원7, 충북11, 충남15, 경북18, 경남16, 전북14, 전남17, 특·광역3 · (서비스 작목) 노지작물 42종: 과수14, 채소10, 식량10, 특용·기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역) 전국 155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156개) 중에 올릉도 제외 · (서비스 작목) 노지작물 44종: 감귤, 녹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민간협력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p>서비스 확대 (‘25.11.1.)</p> <p>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 (063-238-2518)</p>

09. 국방·병무

병무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업맞춤 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 맞춤특기병 지원 시 38개 특기(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만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83개(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로 확대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이수 필요 	제도개선 ('25. 7월)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22)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판정검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 추가 	제도 개선 ('25.7월)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7)
병적 별도관리 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 별도관리대상 관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 진료기록 등의 자료요청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 별도관리대상 관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다만, 처분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등 확인 필요 시 3년 동안 관리기간 연장) ● 진료기록 등의 자료요청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요청 근거 마련 	병역법 ('25.9.19.)
			병역조사과 (042-481-2891)

병무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가산점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군 모집 평가 항목 및 가산점 적용 상이·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병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 부담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군 협의, 군 복무와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 가산점 폐지 및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 가산점 배점(15→10점) 및 항목(23→21종) 축소 등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5.10월)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전방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일 재 결정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 전방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 시 모든 부대로 입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부대 반복 결정에 따른 불만민원 해소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25.7.1.)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대상 전시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 	병역법 ('25.7.8.)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도입('25. 9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역법 개정 · 복무 중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시 복무중단 가능 · 본인의 질병치료에 한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복무중단.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복무중단 가능 	대체역법 ('25.9.19.)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978)

방위산업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원 방향· 대상	● '성장지원' 중심	● '성장 + 기술혁신' 명시(지원 범위 확대)	
계획 수립· 추진 체계	●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7.8.)
지원 사업 범위	● 3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	● 9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 〈신규 6개: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49)
산학연 협력 거점	● 별도 규정 없음	●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연구기관'	

10. 행정·안전·질서

법무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의 종류(제12조 제1항 제1호~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추가(제12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의 정서 고려하여 보다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유죄선고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 벌금형 선고 및 집행유예 시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 병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 및 종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 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연장: 판사 직권 - 임시조치 취소: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의 신청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 등 청구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법무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정부 통일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인적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정확한 행정처리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신청 서식에 기재되는 인적사항으로 수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상 정보 기반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및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 타 기관에서 외국인 기록을 최초 생성하는 시점에 법무부의 표준 기본인적정보가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입력(사전 법무부와 타 행정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법무부 누리집 보도자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입국관리법 (‘25.6.21.)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존재 ·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 재판장 재량으로 허가 ● 결정 이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칙적 허가 ● 결정 이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등사 불허 시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02-2110-447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10억 미만 : 87.745%, 10~50억 : 86.745%, 50~100억 : 85.495%, 100~300억 : 79.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10억 미만 : 89.745%, 10~50억 : 88.745%, 50~100억 : 87.495%, 100~300억 : 81.995%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율 1~4%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종류별</th> </tr> <tr> <th>건축</th> <th>토목</th> <th>특수</th> <th>조경(신설)</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4.5</td> <td>15.0</td> <td>15.5</td> <td></td> <td>15.0</td> </tr> </tbody> </table>		종류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신설)	기타	14.5	15.0	15.5		15.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종류별</th> </tr> <tr> <th>건축</th> <th>토목</th> <th>특수</th> <th>조경(신설)</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6.0</td> <td>19.0</td> <td>19.0</td> <td>18.0</td> <td>16.0</td> </tr> </tbody> </table>			종류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신설)	기타	16.0	19.0	19.0	18.0
종류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신설)	기타																														
14.5	15.0	15.5		15.0																														
종류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신설)	기타																														
16.0	19.0	19.0	18.0	16.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규모별</th> </tr> <tr> <th>50억 미만</th> <th>50~300억</th> <th>300억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4.0</td> <td>15.0</td> <td>16.0</td> </tr> </tbody> </table>		규모별			50억 미만	50~300억	300억 이상	14.0	15.0	16.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규모별</th> </tr> <tr> <th>50억 미만</th> <th>50~300억</th> <th>300억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6.0</td> <td>17.0</td> <td>18.0</td> </tr> </tbody> </table>			규모별			50억 미만	50~300억	300억 이상	16.0	17.0	18.0												
규모별																																		
50억 미만	50~300억	300억 이상																																
14.0	15.0	16.0																																
규모별																																		
50억 미만	50~300억	300억 이상																																
16.0	17.0	18.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기간별</th> </tr> <tr> <th>6개월 미만</th> <th>6~12개월</th> <th>12개월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3.0</td> <td>15.0</td> <td>17.0</td> </tr> </tbody> </table>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	13.0	15.0	17.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기간별</th> </tr> <tr> <th>6개월 미만</th> <th>6~12개월</th> <th>12개월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5.0</td> <td>16.0</td> <td>18.0</td> </tr> </tbody> </table>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	15.0	16.0	18.0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																																
13.0	15.0	17.0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																																
15.0	16.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제한입찰 설계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국) 입찰시 공사예산의 1%, 지역의무공동도급은 1.5%를 설계보상비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제한입찰 설계보상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국) 입찰시 공사예산의 1.4%, 지역의무공동도급은 2.1%를 설계보상비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손해 보험의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도 공사에 한해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도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 추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4)

행정안전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미만 공사 적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만 특별신인도 1점 가산점 부여 · 해당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 0.5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미만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신설 및 해당 지역 및 인근 업체 가산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에도 1점 가산점 부여 · 해당 지역업체 및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 1.0점 부여 	<p>「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5.7.1.)</p> <p>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이상 0.5점, 20%이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 업체 비율에 대한 만점 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이상 0.5점, 30%이상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에 대해서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대표사 제외)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제출방법은 직접·우편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전자적 방식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 제출 가능,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개최·평가는 화상(영상)평가 등으로 실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장단가는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조사하여 산출한 가격임에도 입찰 시 낙찰률을 중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 단가 제외('25.9.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공종 금액의 합계액을 입찰가격 평가에서 제외하되, 순공사비율(90%) 미만 투찰 시 2점 감점 	

행정안전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삼성전자(삼성월렛) ※ 정부 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과 안전성·신뢰성·법적 효력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삼성전자(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25.7월부터) ※ 정부 앱에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과 안전성·신뢰성·법적 효력 동일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044-205-2751)
법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공공기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 · (행정·공공기관) 수립지침에 따른 장애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전자정부법」 제56조의2~5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5 ('2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의 등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 및 변경·확정 · (행정·공공기관) 등급산정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분류 결과 및 근거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시행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권고 · (행정·공공기관)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제출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5-2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장애상황 공유, 장애 사후관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수행 또는 장애발생기관에서 수행, 장애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 (행정·공공기관) 장애발생 시 자체없이 행정안전부에 통보, 장애사후관리 수행 및 결과제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제출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17)

행정안전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 (마을순찰대) 운영	● 일부 지자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자체 확대 추진 ·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마을주민을 활용하여 편성 	(‘25.5.15.)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13)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대응 강화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시행 · (실태조사) 지자체장의 다중운집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 (점검·조치) 지자체장의 다중 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 시 안전점검 및 조치 명령 신설 · (중단·해산 권고) 지자체장의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관련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권한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 (‘25.10.2.)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52)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업재해조사표 업무 처리 절차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처리흐름도 부재 ● 산업재해조사표에 주민등록 번호를 전부 작성토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흐름도 신설 ● 산업재해조사표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작성하도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기입란 삭제 ☞ (참고) 기획재정부누리집<보도자료>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6.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기획과 (044-202-8914, 891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금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교육(지정기관) 이수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보수교육 (지정기관)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2. 판금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5년 자격 취득자까지 인정)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교육(지정기관) 이수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보수교육 (지정기관)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기능사'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3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8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변경등록을 해야할 중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업체의 명칭(상호) 2.업체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변경등록을 해야할 중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업체의 명칭(상호) 2.업체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업체의 보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4.29.)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1)

고용노동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의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 취급설비의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10.18.)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9)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인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 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25.5.30.)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9)

여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 시행 ·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입류방지전용통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지원수당이 해당 청소년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 예방 	<p>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 (압류금지) (25.5.23.)</p> <p>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p>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의무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신설 	<p>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25.1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p>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2)</p>

10. 행정·안전·질서

여성가족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만 처벌	● 정보통신망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및 그루밍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10.23)
	●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 미포함	●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다음기관으로 확대 - 외국교육기관 - 청소년단체 - 대안교육기관	
	● 성범죄자 취업 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근거 없음	● 취업 점검 자료제출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6416)
	●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포함	● 자격취득 과정뿐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포함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신규〉	●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침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25.7.26.)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기여객선 통항 수역에 대해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박길이에 상관없이 여객 선이 정기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도록 대상 확대 	<p>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5.5.20.)</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p>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제한속력, 항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출입항로) 부산항 출입항로 내에서 10노트 이하로 항행 ● (광양만 출입항로) 흘수제약선만 깊은 수심항로 항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출입항로) 쾌속여객선은 입출항 시 18노트, 고속여객선은 입항시 12노트, 출항시 14노트 이하로 항행 ● (광양만 출입항로) 흘수제약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박, 암초, 항행장애물 또는 해저면과의 충돌이나 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깊은 수심항로 항행 가능 	<p>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5.5.26.)</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p>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그 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한다)도 있어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그 밖에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그 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한다)도 있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5.5.26.)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급)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선임급)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급)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1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선임급)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1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5.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자격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또는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5.5. 시행 시)

해양수산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향상 ● 로그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PW ● 기상정보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연계(링크) ● SOS 발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기관에 제공정보 · 본인 위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도 표출 반응속도 향상, 사용자 중심의 화면·조작방식 (UI/UX) 개선 ● 로그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PW · (추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증, 지문 인증 ● 기상정보 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정보 앱 표출 ● SOS 발신 시 구조기관에 제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위치정보 · (추가) 본인 전화번호 	<p>공무원임용 시험령 ('25.7.1.)</p> <p>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p>

인사혁신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직적격성평가 (PSAT) 성적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 답변 양식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년도 및 당해년도 5·7급 공채 1차 시험 · (내용) 원점수, 백분위 · (신청)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25년 이후 5·7급 공채 1차 시험 · (내용) 원점수, 백분위 ·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수수료(200원) 부과 	공무원임용 시험령 (‘25.7.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 간이 심의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 정식 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 경미 사건은 간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 	경찰관 직무 집행법 시행령 (‘25.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기한 규정이 부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기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 결정 기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20일의 범위 내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보상금 지급 기간)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 민원 처리 기간 명시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통지수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청구 결과는 문서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제출서류 간소화 및 청구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서 청구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 (청구 결과통지 수단) 문자, 이메일 등 선택권 보장 	경찰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02-3150-0348)

해양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산, 목포, 제주광역 VTS 관제구역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VTS 해역 통항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p><AS-IS>군산광역VTS</p> <p><AS-IS>목포광역VTS</p> <p><AS-IS>제주광역V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VTS 해역 통항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 <p><TO-BE>군산광역VTS</p> <p><TO-BE>목포광역VTS</p> <p><TO-BE>제주광역VTS</p>	<p>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규정 (‘25. 6.21.)</p> <p>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685)</p>

해양경찰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장의 관제신고 내용 및 절차를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진출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신고) 선박교통 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 신고 · (정박신고) 선박교통 관제구역에 닻을 내리고 항행을 멈추는 경우에 신고 · (계류신고) 선박교통 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불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 신고 	<p>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25.6.21.)</p> <p>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규정 (‘25.6.21.)</p> <p>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986)</p>
어선위치발신 장치 고장 등 신고의 전자적 신고방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또는 분실 시 신고서를 파출소에 방문 신고 ●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연기 신청 시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 신고 추가 	<p>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5.9.1.예정)</p> <p>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349)</p>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주취·약물복용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 부재 ·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해서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취·약물복용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프보드, 패들보드, 카약, 카누, 무동력 요트 등 	<p>수상레저 안전법 (‘25.6.21.)</p> <p>해양경찰청 레저기획과 (032-835-2551)</p>

재외동포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내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p>〈 신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4개 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센터 포함) 및 경찰서 방문 	<p>〈 좌동(기준과 동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운전면허 전담 창구 운영(재발급·갱신,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 등) · 예약방법: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접속 후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 선택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참조 	<p>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 ('25.5.7.개시)</p> <p>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55)</p>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성·역기능에 대해 이용자-사업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부재 ● 생성형 AI의 위험성 등 각종 정보를 일반인들이 얻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제보) 이용자로부터 생성형 AI의 폭력·성범죄·명예훼손·오정보 등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제보를 받아 사업자·이용자에게 공유 · (정보 제공)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개설 	<p style="text-align: center;">(~25.9월 오픈)</p> <p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이용자 보호혁신과 (02-2110-1572)</p>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지원금의 15% 이내) ●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거주 지역·신체적 조건 · 가입유형 ·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거주 지역·신체적 조건 ● 시책 수립 등(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통신사업법 (25.7.22.)</p> <p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p> <p style="text-align: right;">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p>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강화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7.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가. 사람의 사망사고가 확인되었을 때 나.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소외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8. 관계규정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7.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가. 사람의 사망사고가 확인되었을 때 나.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진단 및 치료하고자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8.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확인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게 피부 흉터,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었을 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25.5.16)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 등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연료주기시설의 종류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업 허가, 주무부 장관의 지정 으로 허가체계 구분 ● 허가서류가 시설별로 상이하고, 제출 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없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 건설·운영 ● 시설의 종류와 관계 없이 건설· 운영허가 신청서류를 통일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허가서류에 예비·최종 안전성분석 보고서 추가 <p>☞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알림마당>보도자료>“핵연료 제조시설 안전성 허가 절차 건설·운영 단계별로 적용한다”("24.10.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자력안전법('25.10.23. 시행)</p>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외 별도 요건 없음 ·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관리·감독) 의무 없음 · (대리인 업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규정 · (과태료) 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대리인의 지정형태, 관리·감독, 대리인 업무, 과태료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인 지정 추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하였거나,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 (관리·감독)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 (대리인 업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로 명시 · (과태료) 국내법인 미지정 위반,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처리방침 미포함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법 (25.10.2.)</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8)</p>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https://whatsnew.moef.go.kr>

